

#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이중과세배제 및 CFC 세제를 중심으로 -

2018. 6

#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이중과세배제 및 CFC 세제를 중심으로 -

2018. 6.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전 병 목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김 준 현 공인회계사

장 우 용 공인회계사

# 목차

I. 서론 .....	7
II.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국외소득 과세체계 .....	10
1. 해외 투자 및 국외원천소득 현황 .....	10
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 현황 .....	10
나. 국외원천소득 지급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현황 .....	11
2. 국외원천소득 관련 법인세제 .....	14
가. 개관 .....	14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	15
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	17
3. 우리나라 세제의 문제점 .....	21
III.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의 국제동향 및 주요국의 제도 .....	23
1.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의 국제동향 .....	23
가. 개관 .....	23
나. 이중과세조정제도 .....	23
다. CFC제도의 국제적 동향 .....	27
2. 미국 .....	36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	36
나. 국외배당소득면제 .....	41
다. CFC제도 .....	47

3. 일본 .....	52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	52
나. 국외배당소득면제 .....	54
다. CFC제도 .....	61
4. 영국 .....	68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	68
나. 국외배당소득면제 .....	71
다. CFC제도 .....	74
5. 독일 .....	81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	81
나. 국외배당소득면제 .....	83
다. CFC제도 .....	85
IV. 국제비교 .....	92
1.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비교 .....	94
2. CFC제도의 비교 .....	98
V. 시사점 .....	101
1. 국외원천소득 과세에 대한 전반적 정책 방향 .....	101
2. 국외 배당소득에 대한 정책 시사점 .....	102
가. 지분면세제도 도입 검토 .....	102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보완 .....	104
3. CFC제도의 개선방향 .....	105
참고문헌 .....	107

## 표 목차

〈표 II-1〉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신고 내역 .....	10
〈표 II-2〉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누계(2015년말 기준) .....	11
〈표 II-3〉 투자자 업종 및 기업 규모별 국외배당금 지급 현황 .....	12
〈표 II-4〉 투자자 업종 및 기업 규모별 해외 현지법인 로열티 지급 현황 .....	12
〈표 II-5〉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황 .....	13
〈표 III-1〉 OECD 국가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도 .....	26
〈표 III-2〉 국가별 CFC규정 도입 현황 .....	27
〈표 III-3〉 BEPS Action3의 주요 권고사항 요약 .....	35
〈표 III-4〉 미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규정의 변천 .....	38
〈표 III-5〉 미국 CFC 과세소득 범위 .....	48
〈표 III-6〉 일본 배당소득면제 도입 세효과 비교 .....	59
〈표 III-7〉 영국 배당소득 과세 면제유형 .....	73
〈표 IV-1〉 이중과세조정제도 및 CFC제도의 국제비교 .....	92

## 그림 목차

[그림 III-1] CFC 적용 사례: 간접지배의 계산 .....	29
[그림 III-2] CFC 적용 사례: 특수관계자를 통한 분산 지배 .....	30
[그림 III-3] CFC 적용 사례: 비특수관계자의 이해관계자 보유 지배 .....	31
[그림 III-4] CFC 적용 사례: 최저금액 기준 소득분할 회피 예시 .....	33
[그림 III-5] 일본의 지분면세제도 도입 전·후의 CFC 과세 조정 .....	60
[그림 III-6] 일본의 세법개정 전·후의 CFC 과세요건 비교 .....	67
[그림 III-7] 영국 CFC제도의 적용 체계 .....	74

## I. 서론

-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저세율국<sup>1)</sup>에 소득을 지나치게 유보하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내로 이익을 재송금(repatriation)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재정비가 중요한 정책 현안이 됨
  
- 최근 주요 선진국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도 경제적 이중과세 경감 및 국내소득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국외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추세임
  - 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배당소득 면제 등의 이중과세 경감 조치와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현재 OECD 회원국 중 대다수가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아닌 지분면세제도(participation exemption)를 적용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중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우리나라, 멕시코 등 5개국을 제외한 30개 OECD 회원국이 지분면세제도(participation exemption)와 같은 국외소득면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은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해외직접투자소득(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해 지분면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과 영국은 2009년부터 지분면세제도를 시행함

---

1) 본 보고서에서 저세율국이라는 용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타국에 비하여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를 의미함

-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지분면세제도로 변경한 국가들은 다국적기업의 해외 유보이익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 이해됨

- OECD 및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저세율국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식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CFC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OECD는 2015년 10월 세원잠식 및 조세회피 방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CFC 규정의 개선 사항을 담은 Action 3을 발표함
  - 미국은 2017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법인에 무형자산을 이전하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세대상 해외자회사 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일본은 2017년 4월부터 저세율국을 조세피난처로 판단하던 기준을 소득 및 사업내용에 따라 조세피난처로 판단하도록 개정함
  
- 우리나라는 내국법인의 전 세계소득에 과세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 및 저세율국 소재 법인에 대한 CFC제도를 큰 변화 없이 적용하고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국가별 한도 적용 및 간접납부세액 요건 강화 등을 통해 다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CFC규정은 1995년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로 최초 도입 이래 2009년 세법개정을 거쳐 저세율국에서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음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과세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OECD 및 주요국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및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소득 환류 및 저세율국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 규정, CFC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지분면세제도나 CFC규정 각각에 대한 개별적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CFC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지분면세제도하에서 적용하는 것과 외국납부세액공제하에서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나 과세 범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국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체계의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CFC규정 등에 대한 OECD 회원국의 제도 동향 및 권고 사항 등을 검토함
  - 최근 지분면세제도를 도입한 미국을 포함하여 2009년에 도입한 영국과 일본, 그리고 EU 회원국 중 독일 등 주요 조사대상 국가들의 관련 제도를 분석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지분면세제도의 특징 및 요건, 혼용 여부, CFC규정의 세부 요건 등을 검토
  - 각 제도들의 내용 및 적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국외원천소득 과세체계의 국가별 특징을 비교 분석
  
- 이하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투자 현황을 개괄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제도의 특징을 검토함
  - 제III장에서는 OECD 및 주요 조사대상 국가들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의 내용 및 특징을 세부적으로 검토함
  -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를 비교 분석함
  - 제V장에서는 주요 검토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 시사점을 제시함

## Ⅱ.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국외소득 과세체계

### 1. 해외 투자 및 국외원천소득 현황

#### 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 현황

-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북미 지역 등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고 있음
  - 전체 해외투자 신고 금액은 2013년 363억 3,200만달러에서 2017년 494억 2,800만달러로 증가하였음
  - 주로 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고, 북미, 중남미, 유럽 등에도 꾸준히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Ⅱ-1〉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신고 내역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고금액 계	36,332	35,910	40,671	49,618	49,428
아시아	12,420	11,341	16,203	13,555	15,356
중동	421	964	1,603	1,110	794
북미	6,822	11,058	11,430	19,345	14,381
중남미	6,862	4,882	6,689	7,164	8,987
유럽	7,053	5,962	3,518	6,261	8,524
아프리카	392	290	179	304	276
대양주	2,361	1,413	1,050	1,880	1,11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 2015년말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 62,579개의 현지법인을 두고 있으며 법인당 투자금액은 평균 약 5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현지법인 개수는 아시아에 약 68%가 집중되어 있으며, 북미와 유럽 지역에도 상당수의 현지법인이 존재함
  - 법인당 투자 규모는 유럽이 가장 높으며, 아시아는 단위당 투자액이 가장 낮은 수준임

〈표 II-2〉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누계(2015년말 기준)

(단위: 개, 천달러, %)

	구분		투자비중		법인당 투자금액
	현지법인 수	투자금액	현지법인 수	투자금액	
아시아	42,467	136,373,817	67.9	44.1	3,211
북미	13,247	74,659,852	21.2	24.2	5,636
유럽	2,747	46,179,676	4.4	14.9	16,811
중남미	1,493	23,346,602	2.4	7.6	15,637
대양주	1,522	14,161,178	2.4	4.6	9,304
중동	633	9,877,881	1.0	3.2	15,605
아프리카	470	4,422,952	0.8	1.4	9,411
전체 계	62,579	309,021,958	100.0	100.0	4,93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5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p.13

### 나. 국외원천소득 지급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현황

-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배당금은 2015년 현재 약 30억달러 수준이며 제조업 및 대기업의 배당 지급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체 배당금 중 대기업 지급액은 약 27억달러로 약 90%의 비중을 차지함
  - 배당금 지급 법인의 대부분은 흑자를 시현한 현지법인이며,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2,890개의 현지법인 중 11.7%인 338개 법인이 국내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함

〈표 II-3〉 투자자 업종 및 기업 규모별 국외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1,372	196	20	1,588
광업	363	-	21	384
도소매업	396	6	-	402
부동산임대업	168	3	44	215
전기가스업	127	-	-	127
건설업	125	3	-	129
전문과학기술업	4	-	2	6
금융보험업	22	-	-	22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	9	1	-	10
기타	140	12	-	152
전체	2,725	221	88	3,03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5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p.68

-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로열티는 2015년 현재 약 31억달러로 배당금 지급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며 제조업의 지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제조업의 로열티 지급액이 약 29억달러로 약 93%를 차지함

〈표 II-4〉 투자자 업종 및 기업 규모별 해외 현지법인 로열티 지급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전체
제조업	2,644	271	1	2,916
광업	10	-	-	10
도소매업	98	5	-	103
부동산임대업	13	2	6	21
전기가스업	2	-	-	2
건설업	7	-	-	7
전문과학기술업	1	0	-	1
금융보험업	-	0	-	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	24	10	-	34
기타	26	4	2	32
전체	2,824	291	10	3,12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5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p.65

- 이외에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차입금 이자는 2015년 현재 약 4억 2천만달러로서 배당금이나 로열티 등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임
- 국세통계상 국내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최근에 다소 완화되고 있음
  - 2012년 이후 2016년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17년도 총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약 3조원 규모로 다소 낮아졌음
  -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규모는 법인 수에 비해 작은 편이며 주로 대기업 등의 일반기업들의 법인당 공제 규모가 크게 나타남

〈표 II-5〉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일반법인			중소법인			합계		
	법인 수	총액	법인당	법인 수	총액	법인당	법인 수	총액	법인당
2012	601	1,511,830	2,516	599	84,193	141	1,200	1,596,023	1,330
2013	650	2,441,579	3,756	665	88,984	134	1,315	2,530,563	1,924
2014	743	2,517,112	3,388	626	87,299	139	1,369	2,604,411	1,902
2015	776	2,710,392	3,493	591	75,227	127	1,367	2,785,619	2,038
2016	853	3,883,665	4,553	671	62,989	94	1,524	3,946,654	2,590
2017	809	2,957,860	3,656	684	64,360	94	1,493	3,022,219	2,02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2. 국외원천소득 관련 법인세제

### 가. 개관

-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중 과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특히 자회사 형태로 해외에 진출한 경우 모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은 이미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순이익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편, 자회사 형태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자회사에 소득을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CFC제도를 두고 있음
  - 해외지점과 달리 해외자회사는 국내의 모회사와 별도의 실체이므로 국내에서는 해외자회사가 모회사에 배당하지 않는 이상 자회사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이익을 쌓아두고 모회사로 가져오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모회사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CFC제도를 두고 있음
- 결국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완화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CFC제도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관리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
  - 지분면세제도는 해외 유보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장려하는 규정인 반면, CFC제도는 해외에 소득을 유보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규정임

- 궁극적으로 해외자회사의 유보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양 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CFC제도를 살펴봄

##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법인의 과세표준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며,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상응하는 만큼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음<sup>2)</sup>
-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또는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는 직접 및 간접 납부세액 등이 포함됨
  -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sup>3)</sup>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sup>4)</sup>
  - 간접외국납부세액<sup>5)</sup>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
-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지분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응되는 외

---

2) 「법인세법」 제57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4) 다음의 금액(가산금과 가산세는 제외)을 포함함(「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5)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및 제9항

국납부세액을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출함

-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25%(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적용 가능
- 적용 산식

$$\frac{\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text{수입배당금액}}{\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기본적으로 직접 및 간접 등 외국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은 국가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함<sup>6)</sup>

- 적용 산식:

$$\text{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면제} \cdot \text{세액감면대상}}{\text{국외원천소득} \times \text{면제} \cdot \text{감면비율}} / \text{과세표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

- 국외원천소득: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함
  -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sup>7)</sup>
  - 또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이하 “공제액 등”이라 함)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임<sup>8)</sup>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

6)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8)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 및 제96조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국별한도액 방식)을 적용함

-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폐지됨
  - 국별 한도액 방식에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외원천소득 금액 계산은 각국별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한도초과로 미공제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단,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sup>9)</sup>
  -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sup>10)</sup>

#### 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 우리나라의 특정외국법인(CFC) 세제는 1995년도에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로 도입된 이래 2009년 개정 이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로 취지가 변경됨
- 1995년 말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7조에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9년 말 세법개정에서 동 규정의 적용지역에서 조세피난처를 제외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취지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로 변경함

---

9)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 1) 적용 대상

- 특정외국법인세제에서 납세자인 내국인은 특정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해야 함<sup>11)</sup>
  - 특수관계는 의결권 보유 비율, 공통의 이해관계 및 실질적 지배력 등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함
  
-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저세율 국가는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함
  -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함
  -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함
    - 저세율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더라도 특정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해당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간주하여 특정외국법인 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sup>12)</sup>

## 2) 과세대상 소득 종류

- 기본적으로 소득의 종류와 무관하게 저세율국에 소재하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하되,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이 해당 저세율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sup>13)</sup>

- 다만, 다음과 같은 업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특정외국법인 과세제도를 적용함
  -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등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일정 요건<sup>14)</sup>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sup>15)</sup>

### 3) 간주배당금액 산정 및 과세

-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당해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함<sup>16)</sup>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4)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 ① 상기 본문에서 열거한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가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50%를 초과할 것. 단,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함)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본문에서 열거한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인 과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총매입원가의 합계의 50%를 초과할 것.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봄.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text{배당간주금액} = \text{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times \text{내국인의 특정외국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배당가능유보소득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에 잉여금조정을 가산하며 여기에 당기 배당금·분배금 등을 공제하여 산출함<sup>17)</sup>
-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직·간접비율을 모두 고려하며, 여러 단계의 법인들이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지분 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함<sup>18)</sup>
  
- 간주배당금액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직접 및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향후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을 경우, 당초 간주배당금액을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 가능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특정외국법인이 납부한 외국 법인세액 중 간주배당금액에 상당한 법인세액을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음
  
- 내국인이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특정외국법인이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 이 월익금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함<sup>19)</sup>
  -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2항

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3. 우리나라 세제의 문제점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글로벌기업들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해외 소득 유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조세 측면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해외 현지법인 투자 규모에 비해 배당금으로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것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임
  - 해외 현지법인의 소득을 본국 모회사로 지급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과세 문제로 인해 해외 소득 유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sup>20)</sup>
  
- 국제적으로도 기업들의 국제거래에서 나타나는 이중과세 가능성을 낮추고 조세경쟁력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관련 세법은 큰 변화가 없음
  - 거주지주의(또는 전 세계과세원칙)보다는 원천지주의를 채택하여 이중과세 부담을 낮추고 세제를 간명화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지수는 OECD 회원국들 중 낮은 편이며 그 중에서도 국제조세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함<sup>21)</sup>

20) Collins and Shackelford, "Global organizations and taxes: An analysis of the dividend, interest, royalty, and management fee payments between U.S. multinationals' foreign affiliat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ume 24, Issue 2, 15 December 1997, pp.151-173

Desai, Mihir A., Dhammika Dharmapala,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06, vol. 79, issue 1, pp.145-179

Foley, C. Fritz, Jay C. Hartzell, Sheridan Titman, Garry Twite, "Why do firms hold so much cash? A tax-based explan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07, vol. 86, issue 3, pp.579-607.

Hanlon, Michelle, Rebecca Lester and Rodrigo Verdi, "The effect of repatriation tax costs on U.S. multinational investmen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15, vol. 116, issue 1, pp.179-196

21) 송은주·이정엽(2017)

-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강화로 인해 원천지국 과세주의와의 괴리가 커지며 해외소득 환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2014년 세법개정 이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별 한도만 인정되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도 자회사 지분율 25% 이상 요구함
  - 상대적으로 저세율국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배당 지급 시 국내 모회사 단계에서의 추가 과세 부담이 커져 배당 송금 수요를 낮출 가능성이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투자소득 등 이동성 소득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미비하여 상대적으로 실질사업 소득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질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투자소득으로부터의 이익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국가별 한도를 적용할 경우, 저세율국으로부터의 투자소득뿐만 아니라 실질사업 수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송금에 대해서도 본국에서의 과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특정외국법인 세제의 경우 세부 규정이 복잡하고 실질적 사업을 영위함에도 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상당히 존재함
  - 원천지주의가 아니라 거주지주의 과세를 하면서 특정외국법인 세제를 운용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과세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Ⅲ.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의 국제동향 및 주요국의 제도

#### 1.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의 국제동향

##### 가. 개관

- 최근 세계 각국은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위하여 지분면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CFC제도를 통하여 해외 소득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2018년부터 지분면세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기존의 CFC제도 외에도 더욱 강화된 소득이전 조세회피 방지제도인 저율과세 다국적 무형자산 소득(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세제를 신설함
  - 국외원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자국의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유보소득을 국내로 환류하되, 반대로 해외자회사로 소득을 이전하는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규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이에 아래에서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제도인 지분면세제도와 CFC제도의 도입 추세 등 국제적 동향을 살펴봄

##### 나. 이중과세조정제도

- 이중과세조정제도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지분면세제도와 같은 국외소득면제

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들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손금산입방식을 적용하기도 함

- 자본수출국 입장에서 투자가가 국내 투자 또는 국외 투자 어느 쪽에 투자하든지 관계없이 조세부담을 동일하게 하여 세전수익이 동일한 점에서 국내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자본수출 중립성이라고 함<sup>22)</sup>
  - 자본수출의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수출국의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하든 국외에 투자하든 창출한 소득에 동일한 세부담이 되어야 하므로, 전 세계소득에 과세한 뒤 해당 국가에서 부담한 조세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이 유리함
  
- 한편, 자본수입 중립성 이론은 자본수입국 입장에서 자국 자본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외국 자본투자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해서 세부담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즉, 한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세율로 과세될 때 자본수입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지지하는 이론임<sup>23)</sup>
  
-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목적 및 필요에 따라 상기의 국외소득면제제도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 또는 양 제도를 병용하고 있음
  - 한편, 이외에도 손금산입방식이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손금산입방식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허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전 세계소득에 과세를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조정을 하고 있으나, 특정 소득유형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국외소득 면제방식을 운용하고 있음

22) 안종석·구자은,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23) 오남교,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방안 연구」, 2013.

- 특히 배당소득 등 경영참여소득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이익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아닌 국외소득면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과거 2003년에는 28개<sup>24)</sup>의 OECD 회원국 중 15개국<sup>25)</sup>이 배당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였으나, 현재는 OECD 3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의 5개국을 제외한 30개 국가에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외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sup>25)</sup>
  - 미국의 경우 2017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지분면세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2018년부터 시행됨
  - 일본의 경우 2009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배당부터 지분면세제도를 시행함<sup>26)</sup>
  - 영국의 경우 2009년 7월 1일부터 받는 지분면세제도를 적용함<sup>27)</sup>
  - 핀란드와 뉴질랜드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 방식을 폐지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과세면제방식으로 선회함
    - 핀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환(1990년) → 과세면제 재도입(2005년)
    - 뉴질랜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환(1988년) → 과세면제 재도입(2009년)
  - 호주의 경우 1991년 배당소득면제제도를 최초 도입하였으나 적용대상 국가를 일부 국가로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시행하였고, 2004년 7월 1일 이후 지급된 배당부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분면세제도를 시행하도록 개정함<sup>28)</sup>

24) 28개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과 미국임

25) Hirokazu Mizobata and Masaaki Suzuki, "The Effects of Repatriation Taxes on FDI: Evidence from OECD Multinationals," 2014.9.

26) Yoshihiro Masui, "Taxation of Foreign Subsidiaries: Japan's Tax Reform 2009/10,"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Vol.64, No.4, p.242

27) 영국 재무부,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hm-treasury.gov.uk/d/bud09\\_complereport\\_2520.pdf](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hm-treasury.gov.uk/d/bud09_complereport_2520.pdf), 검색일자: 2018. 7. 17.

28) KPMG, <http://www.kpmg.com.au/portals/0/enrpublication.pdf>, 검색일자: 2018. 7. 17.

- 이탈리아의 경우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개정에서 조세의 간소화, 법인세를 인하와 함께 배당에 대한 국외소득면제제도를 시행함<sup>29)</sup>
  - 노르웨이의 경우 2004년 3월 26일부터 배당에 대한 국외소득면제제도가 시행됨<sup>30)</sup>
  - 2000년 이후 배당에 대한 국외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체코(2004), 에스토니아(2005), 독일(2001), 그리스(2011), 일본(2009), 노르웨이(2004), 폴란드(2004), 슬로바키아(2004), 슬로베니아(2004), 스페인(2000), 스웨덴(2003), 터키(2006), 영국(2009), 미국(2018)의 14개국임
- 다만, 최근 도입국가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 EU 가입국이며, EU 가입국의 경우 지분면제제도를 권고하는 EU 모회사법(EU parent-subsidiary directive)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분면제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폴란드, 그리스의 경우 EU 가입국가에 한해서만 지분면제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표 III-1〉 OECD 국가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도

유형		국가
세액공제방식		한국,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국외소득 면제방식	100% 과세면제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sup>3)</sup> , 스페인 <sup>3)</sup> , 스웨덴, 터키, 미국, 그리스 <sup>1)</sup> , 폴란드 <sup>1)</sup> ,
	97% 과세면제	노르웨이
	95% 과세면제	프랑스 <sup>2)</sup> ,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슬로베니아, 스위스

주: 1) 그리스와 폴란드는 EU 국가에 한해서만 지분면제제도 운용

2) 프랑스는 EU 국가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99% 소득면제

3) 슬로바키아와 스페인은 조세조약 체결국에 한하여 지분면제제도

자료: 김재진·송은주·마정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2011, p.16을 기초로 IBFD(<https://www.ibfd.org>)의 국가별 Country Analyses를 참고하여 저자 업데이트

29) OECD, <https://www.oecd.org/tax/tax-policy/37154690.pdf>, 검색일자: 2018. 7. 17.

30) Eivind Furuseth, "Norway - Corporate Taxation 7. International Aspects," IBFD.

다. CFC제도의 국제적 동향

1) 각 국가별 CFC규정 도입 현황

- 피지배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규정은 조세피난처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투자자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거주지국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응하는 조세회피방지제도임
-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CFC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들도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도입국가는 그리스(2014년), 러시아(2015년), 브라질(2015년), 칠레(2016년), 루마니아(2018년), 우크라이나(2018년), 폴란드(2018년), 슬로바키아(2019년부터 적용 예정) 등임

〈표 III-2〉 국가별 CFC규정 도입 현황

구분	국가
CFC규정 도입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대만,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터키,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칠레, 콜롬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CFC규정 미도입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홍콩, 인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베트남

자료: Deloitte, "Guide to Controlled Foreign Company Regimes," 2014를 기초로 IBFD (<https://www.ibfd.org/>)의 국가별 Country Analyses를 참고하여 저자 업데이트

## 2) OECD BEPS Action3 권고안 및 국제적 동향<sup>31)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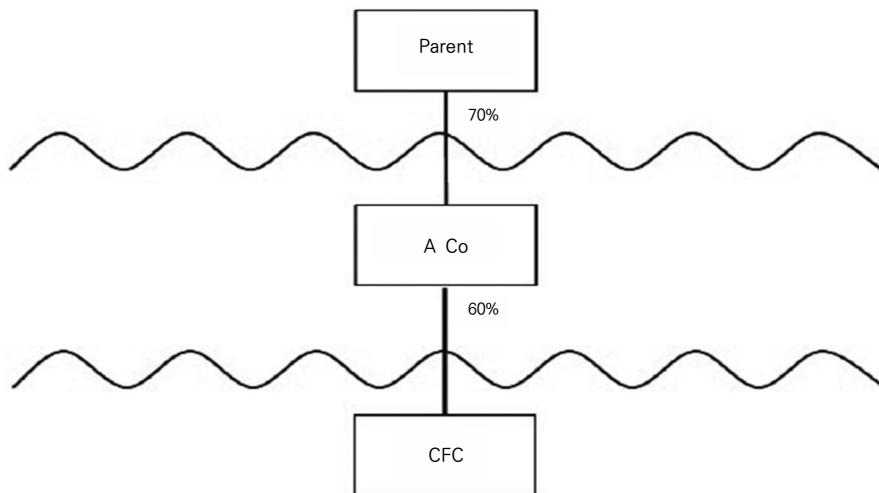
-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이른바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공조 및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함
-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2015년 10월 15개 Action Plan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이 중 BEPS Action 3에는 효과적인 CFC규정의 설계와 관련한 국제적인 권고사항을 담고 있음
- BEPS Action 3에서는 효과적인 CFC제도 설계를 위하여 i) CFC의 정의, ii) CFC의 면제 및 적용 요건, iii) CFC소득의 정의, iv) 소득 계산을 위한 규정, v) 소득 귀속을 위한 규정, vi) 이중과세 방지 규정의 6가지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권고안을 제시함
  - 상기 6가지 구성요소 외에도 억제효과, 이전가격 규정과의 관련성, 납세비용 및 행정부담, 이중과세방지 등의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함
- CFC 정의규정에서 CFC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i) 외국기업이 CFC로 간주될 수 있는 형태인지, ii)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에 대해 충분한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 CFC로 간주될 수 있는 형태에는 법인뿐 아니라 신탁, 파트너십, 고정사업장도 포함하며, 법적 지배뿐 아니라 경제적 지배, 사실상 지배 등도 포함하여 규정하여야 함

31) OECD,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2015.

32) 세법연구센터, 『효과적인 CFC규정의 설계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거주자(법인, 개인)가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보유한 경우 해외자회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또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경제적·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자회사도 포함됨
- 구체적으로 지분의 50%를 직접 보유하는 형태 외에도 권고안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다양한 사례를 모두를 CFC 적용대상으로 권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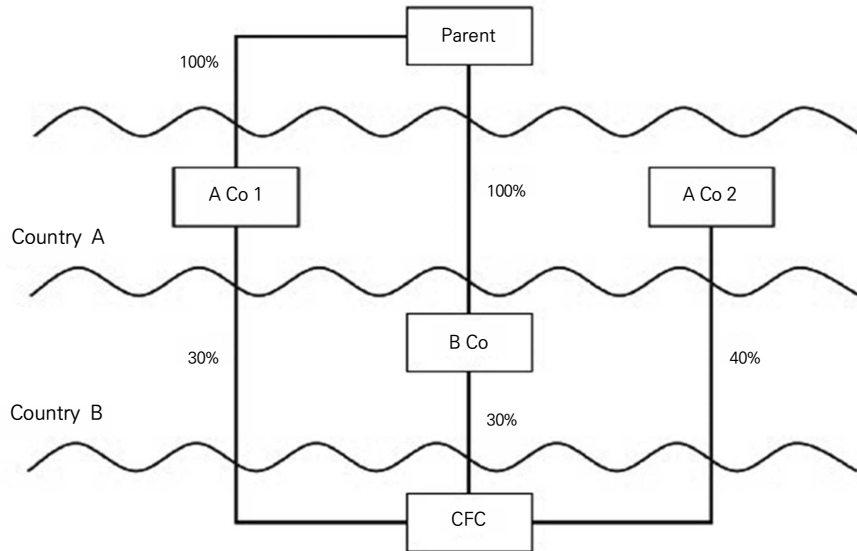
[그림 III-1] CFC 적용 사례: 간접지배의 계산



자료: OECD,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2015, p.29

- [그림 III-1]에서 각각의 단계에서는 50%를 지배를 초과하고 있으나 모회사는 CFC 지분의 42%(70%×60%)만을 보유하고 있음
- 제한된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모회사는 A Co를 통하여 CFC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지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CFC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 단, CFC 과세소득 계산 시 모회사에 배부되는 금액은 실제 경제적 지분인 42%로 제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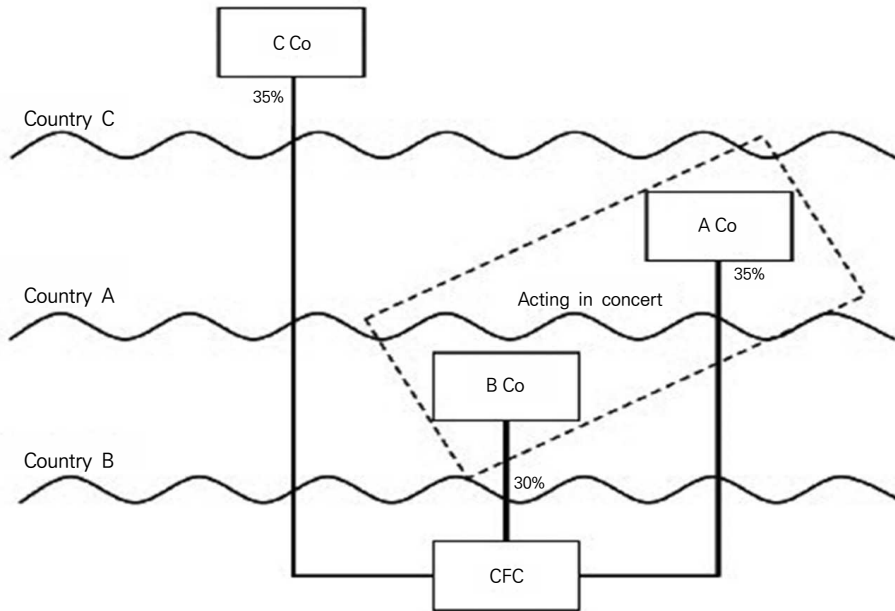
[그림 III-2] CFC 적용 사례: 특수관계자를 통한 분산 지배



자료: OECD,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2015, p.27

- [그림 III-2]에서는 모회사는 다른 국가에 소재한 A Co 1와 B Co의 두 회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CFC를 지배하고 있음
- 단순히 지분율로 판단하는 경우 CFC에 대한 지분율은 각 30%이나 특수관계자의 동일 CFC에 대한 지분 합산을 고려하여 CFC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그림 III-3] CFC 적용 사례: 비특수관계자의 이해관계자 보유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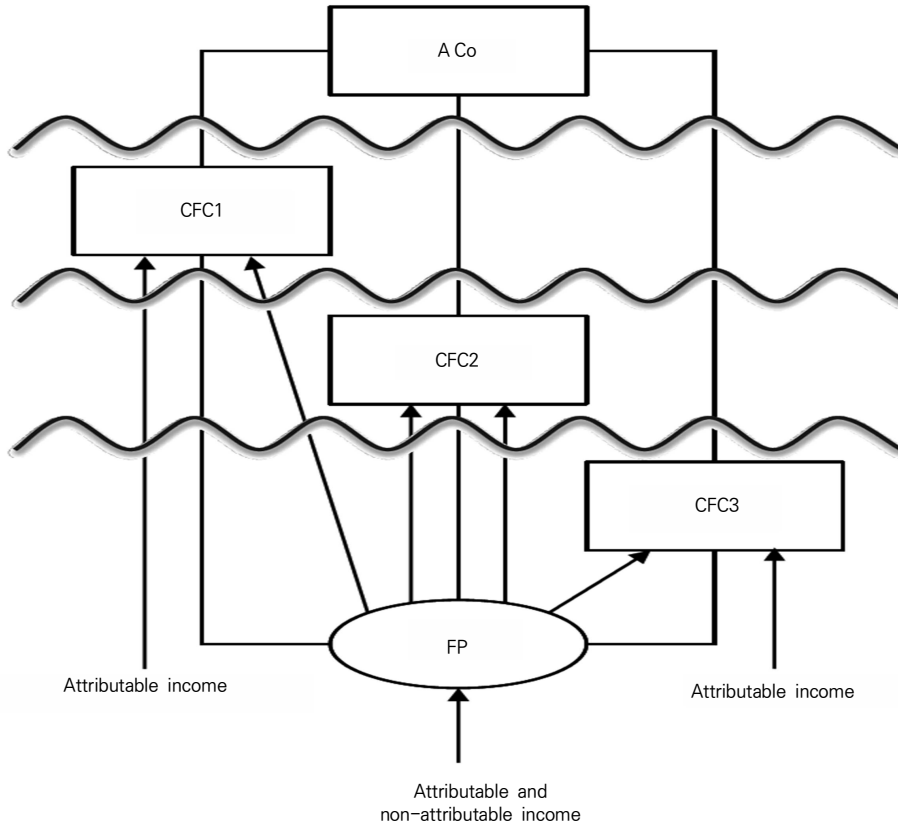


자료: OECD,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2015, p.26

- [그림 III-3]에서는 A국의 A Co와 B국의 B Co는 서로 지분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가정함
- A Co와 B Co는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CFC에 대하여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CFC규정이 적용됨
- CFC 면제 및 적용 요건에 의해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BEPS 위험이 거의 없는 실체들은 CFC 적용을 배제하고 BEPS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세율면제 규정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 세율면제란 모회사 관할국의 세율과 유사한 유효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CFC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회사 관할국의 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유효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CFC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 모회사 관할국과 유효세율이 낮거나 비슷한 국가 또는 유사한 조세체계를 가진 화이트 리스트 국가를 지정하는 방법과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음
- CFC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들에서 다음의 3가지 유형의 면제 및 적용요건을 볼 수 있음
  - CFC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최저금액을 설정하는 경우
  - 조세회피 동기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CFC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회피방지 요건을 두는 경우
  - 모회사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의 거주자인 CFC에만 적용하는 세율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면제요건 중 최저금액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CFC규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 운영이 가능함
  - 많은 국가들에서 CFC규정은 이미 최저금액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최저금액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기업이 자신의 소득을 여러 자회사로 귀속시켜 최저금액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소득의 분할을 통해 최저금액 기준을 우회적으로 회피할 수 있으므로, 둘 이상의 CFC소득을 합산하여 한 개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남용방지 규정을 갖추어야 함

[그림 III-4] CFC 적용 사례: 최저금액 기준 소득분할 회피 예시



자료: OECD,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2015, p.35

- [그림 III-4]에서 A그룹은 하나의 CFC에서 발생한 이익을 서로 다른 관할국에 있는 세 개의 CFC로 분할하기 위해 사업을 재정비하는 경우 각각의 CFC의 소득을 최저금액 기준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
- 최저기준 금액을 각 CFC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방법과 CFC 단계가 아닌 주주 단계에서 적용하는 방안 등이 있음

□ 면제규정 중 조세회피방지 요건은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거래와 구조에 한해 CFC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이는 CFC규정의 효과를 조세회피에 대한 예방조치로 한정하게 될 것이고 만일 선행규정으로 운영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임을 확인하기 위한 CFC규정의 행정 및 협력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 CFC제도의 범위 안에서 소득에 대한 정의 규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다면 별도의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임

□ 면제규정 중 세율면제 규정은 특정 수준 이상의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CFC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이러한 세율면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첫째, 외국의 낮은 세금으로 인한 혜택을 얻기 위해 소득이전이라는 큰 위험을 야기하는 회사에만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저세율 CFC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행정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임
- CFC가 낮은 수준의 세액을 부담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CFC 관할국의 세율을 낮은 세율이라고 간주되는 특정 고정세율과 비교하는 방법과 모국 세율의 특정 비율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도 존재함

□ BEPS 문제를 야기하는 소득이 모회사 관할국에 있는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CFC 소득의 정의 규정을 포함하되 다음의 방법을 포함하여 각국이 직면한 BEPS 위험 정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것을 권고함

- 범주적 접근법: 이동성이 높고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동소득을 CFC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
- 실질기반 접근법: CFC의 실질적인 활동을 고려하여 CFC의 소득 중 일정 비율만 CFC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
- 초과이익 접근법: 통상 이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CFC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

- CFC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CFC 소득 계산 시 어느 관할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와 CFC 소득 계산 시 손실상계 허용범위임
  - CFC 소득은 모회사 관할국 규정에 따라 계산할 것을 권고함
  - CFC 손실은 동일 CFC 또는 동일 관할국의 CFC 이익과만 상계가능하도록 하는 손실상계 제한을 권고하고 모회사 이익과의 상계는 금지함
  
- CFC 소득 계산 후 CFC 주주에게 적절하게 소득을 귀속시키는 규정이 필요함
  - CFC 소득을 귀속받는 사람은 최소지분을 요건을 충족하는 자임
  - CFC 소득 귀속금액은 지분을 또는 지분보유기간에 따라 산정됨
  - 관할국은 CFC규정이 국내법과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납세자의 소득이 포함되는 시기와 운영방법을 결정함
  - CFC 소득의 유형은 각 과세관할국 상황에 맞게 결정함
  - CFC 소득의 적용세율은 모회사 관할국 세율을 적용함
  
- CFC규정의 설계에서 이중과세방지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중과세를 초래하지 않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 CFC 소득이 CFC 소재국에서 과세된 후, 모회사 CFC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지분면세제도 적용을 권고함

〈표 III-3〉 BEPS Action3의 주요 권고사항 요약

구분	OECD 권고사항
CFC의 정의	- 법인 이외에 신탁, 파트너십, 고정사업장도 포함
CFC 면제 및 적용 요건	- 모회사 관할국 세율과 비교하여 크게 낮지 않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CFC 과세대상서 제외 - 특정세율 및 모회사 세율의 특정비율의 적용이 가능 -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국가의 설정도 고려 - 최소적용금액기준(de minimis)의 설정

구분	OECD 권고사항
CFC 소득의 정의	- 각 관할국의 상황에 맞게 선택
CFC 소득 계산을 위한 규정	- CFC 소득은 모회사 관할국 규정에 따라 계산 - CFC 손실은 동일 CFC 또는 동일 관할국의 CFC 이익과만 상계가능(모회사의 이익과는 상계 금지)
CFC 소득 귀속을 위한 규정	- CFC 소득 귀속자: 최소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자 - CFC 소득 귀속금액: 지분율 또는 지분보유기간에 따라 산정 - CFC 소득 신고시기: 관할국의 국내법과 일관성 있게 결정 - CFC 소득의 분류: 각 관할국 상황에 맞게 결정 - 적용세율: 모회사 관할국 세율
이중과세방지 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지분면세제도

자료: 세법연구센터, 『효과적인 CFC규정의 설계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p.5

## 2. 미국

###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소득에 과세를 하되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해 주고 있음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1918년 미국세법(IRC)에 의하여 제정되었음
  - 손금산입방식과 비교하여 손금산입방식이 유리한 경우 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단, 해외거주기간 등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개인(qualified individual)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국외근로소득 및 국외거주비용에 대한 소득면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sup>33)</sup>

33) IRC Sec. 911

- 한편,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세제 개편(Tax cuts and Jobs Act) 시 해외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일정지분율요건과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대신에 배당소득에 대한 국외소득 면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함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 징수금의 성격이 조세이어야 하며,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금액이어야 함<sup>34)</sup>
  - 외국 세무당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과된 세금이어야 하며, 납세자가 징수된 금액을 대가로 하여 특정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총수입금액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주요 원가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 실무적으로 납세자의 순이익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총수입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소득세 대신의 조세’(tax in lieu of income tax)라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체 송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 포함시킴<sup>35)</sup>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기는 미국납세자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sup>36)</sup>
  -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미국 납세자는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합리적이며 정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시점에 실제 조세가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미국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조세가 납부되는 시점

34)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 2009 및 IRC Sec. 901

35) IRC Sec. 903

36) IRC Sec. 905

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발생기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세액공제 방식 대신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음<sup>37)</sup>
  - 매 과세연도마다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공제가능한 외국세액이 미국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상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1921년 개정된 세법에서 일괄한도방식을 도입한 이래 여러 차례 제도의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룸

〈표 III-4〉 미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규정의 변천

개정연도	개정내용
1921년	일괄한도방식
1932년	일괄한도방식과 국별한도방식 중 적은금액
1954년	국별한도방식
1961년	일괄한도방식과 국별한도방식 중 선택
1976년	일괄한도방식
1986년	개별소득유형별 한도

자료: 오남교,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방안 연구』, 2013, p.40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소득유형별로 국외원천소득이 전체 과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함
  - 공제가능한도는 (i) 당해 외국납부세액 (ii) 아래 산식에서와 같이 전체 납부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에 상응하는 부분 중 작은 것으로 함<sup>38)</sup>

37) IRC Sec. 901(a)

$$\text{세액공제 한도} = \text{미국 납세자의 총산출세액}^1) \times \frac{\text{국외원천 과세소득}^2)}{\text{전세계 과세소득}}$$

주: 1) 총산출세액은 납세자의 전 세계 총과세소득에 미국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금액(각종 세액공제 적용 전)임

2) 국외원천소득은 전 세계 과세소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006년까지는 외국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i) 수동적 소득, ii) 고세율이자소득, iii) 금융서비스소득, iv) 해운업소득, v) 지분율 10~50%인 해외자회사소득, vi) 국제판매 미국회사로부터의 배당, vii) 국제무역소득에 귀속되는 과세소득, viii) 외국판매회사로부터의 배당, ix) 그 외의 소득유형으로 구분하여 한도를 각각 적용하였음<sup>39)</sup>
- 2007년부터는 복잡한 상기의 9가지의 공제한도 소득유형을 간소화하여 소득을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과 일반소득(general income)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계산하도록 함
- 수동적 소득유형은 손쉽게 국가 간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유인이 발생할 수 있는 성격의 소득이므로 소득유형을 간소화하되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한도를 둔 것으로 보임
- 2가지 소득유형 분류방식의 예외로서 피지배외국회사(CFC)와 관련된 소득의 경우에는 도관기준(look-through rule)을 적용하여 미국법인이 소득을 직접 창출한 것처럼 재구분한 후 수동적 소득과 일반소득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유형별 수익에서 각 소득유형에 속하는 비용을 배부하여 유형별 소득을 산출함
  - 비용과 소득유형 간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배분하며, 그 배부방법의 예시로서 판매량, 총매출액, 매출원가, 사용 자산, 인건비, 사용 공간, 사용 시간 등을 들고 있음<sup>40)</sup>

38) IRC Sec. 904(a)

39) 정재호·구자은·송은주, 『미국·일본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2009

- 수동적 소득유형에는 이자, 배당, 임대료, 사용료소득, 연금 등을 포함하며, 임대료와 사용료소득이더라도 능동적인 수익사업(active trade or busines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동적 소득에서 제외됨<sup>41)</sup>
  - 현지에서 미국의 최고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 고세율로 과세되는 수동적 소득은 일반소득에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함
  - 한편, 은행업, 보험업, 금융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소득은 수동적 소득이 아닌 일반소득유형으로 분류하여 한도를 계산함
  
- 수동적 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소득을 일반소득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관기준이 적용되어 일반소득유형으로 재구분되는 소득도 수동적 소득에서 제외함<sup>42)</sup>
  - 도관기준(look-through rule)의 목적은 미국 납세자가 직·간접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을 통해 획득한 외국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적용 시 해당 자회사를 국외지점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함임
  - 즉, 피지배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도관기준(look-through rule)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발생시킨 원천을 추적하여 해당 소득을 구분하게 됨
  
- 미국의 국내원천소득 또는 국외원천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한도 계산 목적상 미국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계산방법을 규정함
  - 국외원천 발생 결손금의 경우 하나의 소득유형에서 발생한 국외원천 결손금은 다른 유형의 소득과 상계되고 상계 후 잔여 결손금은 미국원천소득과 상계됨
  - 결손금이 발생했던 국외원천소득유형에서 다음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해당 소득유형의 다음연도 국외원천소득의 50%와 과거 해당 소득유형의 국외원

---

40) CFR 1.861-8T

41) IRC Sec. 901(a)

42) IRC Sec. 904(3)

천결손금 중 적은 금액만큼 미국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됨

- 한편, 미국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외원천소득에 안분되며, 다음연도에 미국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미국 국내원천소득의 50% 금액과 과거 미국 국내원천 결손금 중 적은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재분류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종전에는 2년 소급공제와 5년 이월공제가 허용되었으나, 2007년 과세연도부터는 1년 소급공제와 10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됨<sup>43)</sup>
  - 한도초과액은 소득유형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한편, 최근 트럼프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Tax cuts and Jobs Act)을 통하여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외소득 면제방식을 도입함<sup>44)</sup>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외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전 세계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지분면세제도의 도입으로 원천지국 과세제도로 변경됨
  - 배당소득면제제도 도입과 함께 현재 CFC제도와는 별도로 저율과세 다국적 무형자산 소득(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에 추가과세하는 법령을 도입함

## 나. 국외배당소득면제

### 1) 지분면세제도 도입 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 국외지점을 통해 국외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납세자와 현지에 국외자회사를 설립

43) IRC Sec. 901 (C)

44) 미국 의회,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1/text/ih>, 검색일자: 2018.7.17.

하여 사업을 하는 미국 납세자와의 조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외국 납부세액을 도입하였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미국세법에 처음 반영되었던 1918년에 도입됨

-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자회사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sup>45)</sup>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손회사에도 적용되며 손회사 이하 단계의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분율 조건이 부여됨
    -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10%를 보유하여야 함과 동시에 손회사의 간접 보유비율이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자회사의 지분율이 10%라면 손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간접소유비율 5%(10%×50%) 요건을 충족하게 됨
  - 미국 법인 기준으로 지배 구조상 최대 6단계 하위에 있는 회사까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4번째부터 6번째 단계에 있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들이 피지배 외국회사(간접소유비율 50% 이상)이어야 함
  - 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아래 산식에서와 같이 해외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에 동 자회사의 미처분이익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동 금액만큼 미국 모회사의 과세소득이 증가조정(gross-up)됨

$$\text{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 \text{해외자회사 납부 법인세액}^1) \times \frac{\text{당해 배당수령액 (원천징수 차감전)}}{\text{해외자회사 미처분이익 (undistributed earnings\&profit)}}$$

주: 1) 당해 배당금이 당기뿐만 아니라 이전 과세연도를 포함한 누적이익을 재원으로 지급될 경우, 자회사 납부세액 및 미처분이익은 각각 해당 이전 과세연도분을 포함하여 산출함

45) IRC Sec. 902

- 여러 단계의 자회사가 있을 경우 아래에서부터 각 단계별로 상기 산식을 적용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한 뒤 이를 첫 번째 단계 해외자회사의 납부세액에 합산하여 상기 산식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 모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산출 시 손회사 이하 단계의 자회사들이 납부한 법인제도 공제대상으로 반영됨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과 합하여 해당 소득유형별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음
- 1986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배당재원을 구성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발생연도의 가정이 후입선출법에서 풀링(pooling)시스템으로 변경됨
- 개정 전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발생연도와 해당 연도의 법인세를 연도별로 관리하였다가 배당 시에는 최근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함
  - 개정 후에는 1986년 이후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1986년 이후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국외자회사가 모회사에 배당한 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세액으로 계산함
    - 이 방식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발생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1986년 이후 배당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모두 누적하여 계산하게 됨
  - 해외자회사의 세율이 높은 시점에 누적된 금액을 배당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등 배당시기 조정을 통한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임<sup>46)</sup>
- 산출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미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 소득에 가산하여야 함

46) 오남교,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방안 연구』, 2013, p.39

## 2) 지분면세제도

- 미국은 한시적으로 2004년 10월 22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1년간 피지배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하여 85%의 소득면제를 허용한 바 있음<sup>47)</sup>
  - 당시 미국의 법인세율이 35%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배당에 적용된 세율은  $5.25\% [= 35\% \times (1-85\%)]$ 였음
  - 85%의 소득면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승인된 미국 국내의 재투자계획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승인된 미국 국내의 재투자계획이란 배당받은 금액을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하여 신규고용 및 직원 훈련, 인프라 건설, 연구 및 개발, 자본 투자, 기업 재무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미화 5억달러 이상 또는 피지배 외국회사의 재무제표에 미국 이외 지역에 영구적으로 투자된 수입으로 표시된 금액으로 제한됨
  - 소득면제를 적용받는 배당소득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배당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은 공제 불가능함
  
- 2004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미국의 지분면세제도에 대한 도입효과를 실증분석한 선행연구<sup>48)</sup>에 따르면 시행기간 동안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송금액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 다만,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증가된 배당송금액의 사용처가 실제로는 자기 주식 매입의 재원이나 주주에 배당재원으로 활용되었다고 밝힘

47) John G Reinstra, "United States-Corporate Taxation-Country Surveys-6. International Aspects," IBFD.

48) Mitchell Oler, Terry Shevlin, and Ryan Wilson, "Examining Investor Expectations Concerning Tax Savings on the Repatriations of Foreign Earnings under 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2007.

- 2017년 트럼프 정부는 해외에 유보된 소득을 미국 국내로 유입시키고자 해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원천지 과세제도로 전환하여, 미국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미국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함
  - 2017년 11월 2일 미 하원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일자리(Tax Cuts and Jobs Act)’ 법안을 채택하면서 대대적인 세법개정을 하였으며, 세법개정 내용에는 국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자회사의 과세체계를 원천지 과세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됨
  
- 해당 국외자회사의 지분비율을 직·간접으로 10% 이상 보유하는 미국 주주는 새로 도입된 면제제도를 통하여 배당소득은 100%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음<sup>49)</sup>
  - 보유지분을 요건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상기 규정의 도입으로 기존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됨
  - 지분면제제도의 적용이 허용되는 미국기업은 일반법인(C법인)으로 부동산투자신탁 및 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함
  - 해당 국외자회사가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이며, CFC란 과세기간 중 어느 하루라도 미국주주가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를 말함
  
- 지분면제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자회사의 주식을 1년 이상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배당지급일 이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1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유기간 동안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함
  
- 단, 향후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미국에서 비과세됨에 따라 현재 해외에 유보된 이익에 대해서는 일회성 과세(transition tax)규정을 통하여 한 번에 과세하는 규정을 동시에 도입함<sup>50)</sup>

---

49) IRC Sec. 245

- 향후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비과세함에 따라 개정 이전 과세되지 않은 해외소득에 일회성 과세를 하며, 누적된 해외소득 중 현금성 자산(cash position)은 15.5%, 현금 이외에 자산 및 설비에 투자된 경우 8%의 세율로 과세함
  - 현금성 자산은 현금, 외상매출금, 유동자산의 시장가치,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단기대출금을 포함함
  - 과세대상 소득은 1986년 이후부터 2017년 11월 2일 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누적된 '과세되지 않은 세무상 배당가능 이익(earnings & profit)' 중 큰 금액에서 미국법인이 보유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소득임
    - 세무상 배당가능 이익은 재무회계상 이익잉여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세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의 배당능력을 의미하며, 과세표준에 면세소득, 배당소득공제 등을 가산하고, 비용불공제 항목 등은 차감하여 계산함
    - 일회성 과세 금액을 줄이기 위한 고정자산 매입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안이 미 하원에서 채택된 2017년 11월 2일의 유보소득과 2017년 말의 유보소득 중 큰 금액을 과세대상 금액으로 규정함
    - 단, 2017년 11월 2일이 일반적인 법인의 결산일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과세대상 소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납세자가 10월 말의 소득에 2일간의 일별 평균 세무상 배당익을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함
    - 누적된 해외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1986년 이후부터 누적된 이월결손금도 반영함
- 누적된 해외소득에 일회성 과세액은 도입 첫 해에 과도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8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공제함<sup>51)</sup>
- 분할납부 시 5년차까지는 총납부세액의 8%를 균등납부해야 하며, 6년차에는 15%, 7년차에는 20%, 8년차에는 25%를 납부해야 함

50) IRC Sec. 965

51)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17-1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다. CFC제도

- 미국은 미국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금이 낮은 국가에 위치한 해외자회사를 이용하여 최대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장기과세이연에 대응하기 위해 1962년에 CFC 세제를 도입함
  - 이는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이전시켜 과세상 혜택을 누리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반이연세제 중 하나임
  
- CFC 세제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CFC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주식 총가치금액의 합계액 중 직·간접으로 10% 이상 보유하는 미국 주주임<sup>52)</sup>
  - 미국 주주는 거주자, 국내 법인, 국내 파트너십, 국내 트러스트를 포함함
  - 다만, 보험소득과 관련한 특별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종속보험회사(captive insurance companies)인 경우에는 10%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지분 보유자를 미국 주주로 봄
  - 이 규정은 CFC 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대형종속보험사가 주주의 지분을 분산시킴에 따라 CFC 세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됨
  - 2017년 세법개정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보유 여부로 판단하는 기준뿐 아니라 모든 보유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10%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추가되어 CFC를 적용하는 미국 주주의 범위가 넓어짐
  - 미국 주주는 CFC의 과세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CFC를 보유해야 하고 당해 과세연도 동안 최소 30일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상기 30일 보유요건은 제거됨
  - 10%의 주식보유요건은 직접 또는 간접 지분율과 의제지분율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함.

---

52) IRC Sec. 957(a)

- 10% 이상 요건을 충족한 미국 주주들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CFC 주식의 의결권 또는 주식가치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CFC에 해당함
  - 외국법인이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특별규정에 따라 지배요건을 완화함<sup>53)</sup>
    - Subpart F 소득인 보험소득이 총보험료(premium)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지배요건을 25%로 완화함
  
- CFC 세제상 과세소득의 범위는 거래적 접근방법에 의하며, 크게 ‘Subpart F 소득’과 ‘미국 내자산에 대한 투자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Subpart F 소득은 CFC가 수입(earning)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면, 미국 내 자산에 대한 투자소득은 CFC가 창출한 수입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표 Ⅲ-5〉 미국 CFC 과세소득 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Subpart F 소득	특정보험소득	
	외국기지회사 소득	외국기지회사 판매소득
		외국기지회사 용역소득
		외국개인지주회사 소득
		외국기지회사 석유관련소득
	보이콧 관련 소득	
	불법 뇌물 소득	
요주의 국가 소득		
미국 내 자산에 대한 투자소득		

자료: 홍범교·김태훈·마정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p.21.

53) 홍범교·김태훈·마정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및 IRC Sec. 957 (b)

- Subpart F 소득은 특정 보험소득, 외국기지회사(Foreign Base Company) 소득, 보이콧 관련 소득, 불법 뇌물 소득, 요주의 국가 소득의 유형으로 구성됨<sup>54)</sup>
  - 보험소득: Subpart F 소득에 포함되는 보험소득(insurance income)이란 CFC 소재국이 아닌 지역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재보험 또는 연금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 외국기지회사(Foreign Base Company; FBC) 소득: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하여 저세율 국가로 특정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득 유형을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여 규정<sup>55)</sup>
    - FBC 판매소득: 개인용 재산을 특수관계자와 거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당 재산의 제조와 소비가 CFC 소재국 밖에서 이루어질 것
    - FBC 용역소득: CFC가 법률상 CFC 소재국이 아닌 곳에서 특수관계자를 위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보상, 수수료 등의 대가를 의미함
    - 외국개인지주회사 소득: 일반적으로 배당, 임대료, 이자, 로열티, 연금, 투자자산의 처분이익과 같은 수동적 소득을 의미하며, CFC가 능동적 사업에서 창출하고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나 로열티는 외국개인지주회사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FBC 석유 관련 소득: 유정이나 천연가스정에서 추출한 광물의 가공, 운송, 분배, 판매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을 말하며, CFC 소재국에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CFC 소재국에 정박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됨
  - 보이콧 관련 소득: CFC가 국제 보이콧에 참여 또는 협조한 경우 해당 부분만큼 Subpart F 소득을 포함시키는 것을 말함
  - 불법 뇌물소득: 직·간접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한 불법 뇌물 등 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 요주의 국가 소득: 무기수출규제법이 미국 방위 물자 구입을 허용하지 않고 미

---

54) IRC Sec. 953

55) IRC Sec. 954

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있는 국가, 미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된 국가,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CFC 소득을 말함

- CFC가 Subpart F 소득이 없더라도 미국 국내 자산에 투자하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소득합산 규정의 적용을 받음<sup>56)</sup>
  - 국내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시키는 수입은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합산규정을 적용함
    - 2015년 파트너십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CFC가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당 CFC가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됨
  - 이때 미국 국내 자산은 유형자산, 국내법인주식, 무체재산권 등을 말하며, 국채, 예금, 매출채권은 제외됨
  
- 외국기지회사 소득이나 보험소득이 100만달러 미만이거나 CFC 총소득의 5% 미만인 경우에는 Subpart F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외국기지회사 소득과 보험소득의 합이 총소득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소득을 Subpart F 소득으로 간주함
  
- CFC 소재지국의 소득세 세율이 미국 최고 법인세율의 90% 이상인 경우 보험소득이나 외국기지회사 소득을 Subpart F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음
  
-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미국 원천소득은 미국 조세조약에 따라 이를 면세하거나 경감세율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Subpart F 소득으로 보지 않음

---

56) IRC Sec. 954

- 배당소득 인식에 대한 일반원칙과 유사하게 CFC의 Subpart F 소득은 CFC의 당기 '세무상 배당가능이익'(earning and profits; 이하 'E&P')을 초과할 수 없음<sup>57)</sup>
  - CFC는 CFC 소재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의 전기 E&P 결손을 이용해 당기 E&P 한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CFC의 미국 주주는 CFC의 Subpart F 소득과 CFC가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순수입 중 지분비율만큼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함
  
- CFC 지분을 매각한 경우 CFC의 보유기간 동안에 축적된 소득으로서 Subpart F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자본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인식해야 함
  - CFC 세제하에서 미국 주주는 배당소득을 세무상 유리한 자본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임
  
- CFC규정의 적용으로 미국 주주의 총소득에 포함된 금액은 CFC가 동일한 수입을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하거나 실제 주주에게 배당될 때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CFC규정으로 과세된 금액은 미국 주주의 주식 세무상 장부가를 증가시키고, 추후 과세된 부분을 실제 배당받는 경우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를 감소시킴
  - 미국 주주가 받는 배당액 중 CFC규정을 통하여 기과세된 부분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에서 제외됨
  
- 한편, CFC규정과는 별도로 해외자회사(CFC) 소득 중 저세율 과세 무형자산 소득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은 미국 법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함<sup>58)</sup>

57) IRC Sec. 952(c)

58) IRC Sec. 965 및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17-1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과세대상인 '저세율 과세 무형자산 소득'은 해외 자회사 과세표준에서 유형자산을 통한 수익을 제외한 금액임
    - 저세율 과세 무형자산 소득(GILTI) = '[해외자회사 과세표준 - (해외자회사의 사업활동에 사용된 평균 유형자산 합산금액<sup>59</sup>)×10% - 해외자회사 이자비용 합산금액]×미국 주주 지분율'임
  - 이는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세율국에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통해 미국 내 소득을 이전하고, 소득을 해외자회사에 유보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저세율 과세 무형자산 소득에 대하여 추가과세가 발생하는 미국 기업은 부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제율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50%, 그 이후는 37.5%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됨
- 개정된 미국의 법인세율이 21%이므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연도의 저세율 과세 무형자산 소득의 실효세율은 10.5%  $[(100-50)×21\% = 10.5]$ 가 되며,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13.125%  $[(100-37.5)×21\% = 13.125]$ 가 됨

### 3. 일본

####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 일본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소득에 과세를 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외소득면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특정 배당소득을 제외한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59) 평균유형자산 가액은 과세연도의 각 분기별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의 평균값임

- 2009년 세제 개편 전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한 국외소득 면제방식을 적용하는 대신에 해외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일정지분율요건과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에는 중앙정부에 대한 세금과 지방정부에 대한 세금이 포함됨<sup>60)</sup>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법인의 소득 또는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소득의 특정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과 이에 대한 부가세 등과 이와 동일한 세목에 속하는 세금으로 정의함
  - 법인의 특정 소득에 대해 징수편의를 위해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도 포함하는 개념임
  -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소비세(Sales Tax), 재산세(Property Tax) 등은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에서 제외됨
  
- 소득에 대해 고율로 부과된 세금 등 외국법인세가 조세 성격임에도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음<sup>61)</sup>
  - 국외소득에 부과되어 내국법인이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 중 국외원천지국에서 과세표준의 35%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부분은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에서 제외되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방식이 아닌 손금산입방식을 적용받게 됨
    - 2011년 세법개정 전까지는 50% 초과였는데, 이는 일본의 실효세율 수준으로 간주되는 50%를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며, 세법개정으로 35%로 낮춰 2012년 3월 3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sup>62)</sup>

60) 일본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61) 일본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및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

62) 안종석·구자은,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2006. p.42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외국납부세액을 발생시키는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여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임<sup>63)</sup>
  - 공제대상이 되는 모든 외국법인세 등의 금액에 대하여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외원천소득을 일괄 통산하여 구한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는 일괄한도액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일본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3년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음<sup>64)</sup>
  - 공제가능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한도 여유분 또한 3년간 이월을 가능하게 하여 추후 생기는 초과분과 상계를 할 수 있게 함
  
- 손금산입방법과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이므로 나머지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할 수 없음<sup>65)</sup>
  - 단,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더라도 35%를 초과하는 고세율분의 세액공제방식 적용 불가능 강행 규정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나. 국외배당소득면제

### 1) 지분면세제도 도입 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란 외국자회사 및 외국손회사가 현지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 중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취배당에 대응하는 부분을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로 간주하여 그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63) 일본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64) 일본 「법인세법」 제69조 제2항

65) 일본 「법인세법」 제41조

- 일본은 해외자회사의 배당재원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고자 1962년에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함<sup>66)</sup>
  - 해외에서의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위하여 현지에서의 기업재편을 하는 경우 과세상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간접외국세액공제 대상을 1993년 손자회사까지로 확대함
  
-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범위는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배당 결의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함
  - 지분비율이 25% 이상의 손자회사에 과세된 해외 법인세액 중 자회사에 배당된 것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
  -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일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25%의 지분 비율이 10% 또는 15%로 완화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세는 모회사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됨
  - 모회사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법인세액 = 국외자회사의 배당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 (모회사에 대한 배당 등의 금액 / 국외자회사의 배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 단,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모회사에 대한 배당 등의 금액에서 해당 배당금액에 부과된 외국원천징수액에 2배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함

---

66) 정재호·구자은·송은주, 『미국·일본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p.57

## 2) 지분면세제도

- 일본은 2009년 세법개정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국외소득 면제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도입의 주요이유는 다음과 같음<sup>67)</sup>
  - 기존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복잡하게 규정됨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납세비용이 증가되었으므로 지분면세제도 도입으로 이중과세방지제도의 간소화를 위함
  - 국외자회사의 이익이 크게 증가함에도 국내 송금액이 늘지 않자 유보된 배당재원을 일본으로 유입시켜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배당소득에 대한 일본에서의 추가과세를 제거함
  
- 일본의 지분면세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sup>68)</sup>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는 국외자회사로부터의 자국으로의 배당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됨
  - 한편, 우리나라에 소재한 일본계 자회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연구<sup>69)</sup>에서는 명목 배당송금액은 증가하였을지라도 이는 배당시점을 면제규정 이후로 조정하는 기간 이전의 조세 전략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언급함
  
- 외국자회사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25%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국법인이어야 함<sup>70)</sup>
  - 상기의 지분보유비율요건과 지분보유기간요건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의 요건

67) 김재진·송은주·마정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pp.40~44

68) Hasegawa Makoto, Kiyota Kozo, "The effect of moving to a territorial tax system on profit repatriation: Evidence from Japa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17. 9.

69) 최보람, 「투자지국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제도 신설이 원천지국 자회사의 배당성향 및 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2015. 8.

70) 일본 「법인세법」 제23조의2 제1항,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1항

과 동일한데, 이는 면제방식으로 전환 시의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즉, 상기 지분비율인 25%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이라면 세법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직접 원천징수된 금액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잉여금의 배당,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규정하고 있음<sup>71)</sup>
  - 국외자회사의 법률상 배당의 개념이 아닌 일본 국내의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배당소득을 면제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합병, 분할, 유상감자 등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의제배당 및 우선주로부터의 배당도 면제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함
  
- 지분면제제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sup>72)</sup>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공통비용을 차감하여 한도가 산정될 것이므로, 면제방식으로 전환되더라도 배당소득을 창출하는 데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모회사의 비용이 모회사의 과세표준에서 손금에 산입되었을 것임을 감안하여 일괄적으로 5%의 차감률을 적용함
  -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일괄적으로 5%를 배당소득을 창출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하여 95%만을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무상 발생비용의 실제 집계가 어려우므로 제도 간소화를 위하여 입법 시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95%의 일괄면제비율을 도입함
  
- 국외소득방식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득유형은 배당소득으로 한정하였으며, 이자, 사료, 자본이득은 국외소득 면제대상에서 제외함

71) 일본 「법인세법」 제23조의2 제2항

72) 김재진·송은주·마정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p.43

- 이자와 사용료는 국외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비용으로 공제된 부분이므로 국내에서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 이중비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자본이득도 자본손실과의 대응 등 소득산정의 실무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지분면세제도가 적용되는 소득과 관련된 원천세액은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국외자회사 배당을 일본의 국내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배당과 관련된 원천세의 이중과세 배제를 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배당 총액을 면제대상 배당소득으로 함
- 국외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 도입 시 시행 전에 배당이 지불되어 시행 후에 배당과 관련되는 법인세액이 확정되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 시행시기를 넘기는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령·세액 확정 의 경우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둠<sup>73)</sup>
- 지분면세제도 도입 전·후의 세효과를 사례를 통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의 경우 한도가 충분하더라도 내국법인보다 저세율 국가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추가 과세가 발생함
  - 지분면세제도 적용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되므로 복잡한 한도 계산 등의 절차 또한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도가 간소화됨

73) 김재진·송은주·마정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p.48

〈표 III-6〉 일본 배당소득면제 도입 세효과 비교

개정 전 세액공제방식		개정 후 소득면제방식	
구분	금액	구분	금액
A. 배당소득	760	A. 배당소득	760
B. 배당소득 (원천세 적용분)	40	B. 배당소득 (원천세 적용분)	40
C. 배당소득 (간접외납세액공제적용분)	200	C. 배당소득익금불산입 (95% 적용)	(760)
D. 과세표준 (A+B+C)	1,000	D. 과세표준 (A+B+C)	40
E. 세율	30%	E. 세율	30%
F. 산출세액 (D X E)	300	F. 산출세액 (D X E)	12
G.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40	G.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n/a
H.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200	H.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n/a
I. 일본 내 세금 (F-G-H)	60	I. 일본 내 세금 (F-G-H)	12
J. 해외부담세금	240	J. 해외부담세금	240
K. 세금부담총액 (I + J)	300	K. 세금부담총액 (I + J)	252

주: 지분을 100%인 해외자회사의 세전소득이 1,000, 현지 법인세율 20%, 현지법인세 200, 세후이익(배당재원) 배당송금 시 원천세 40, 송금액은 760, 일본 내 법인세율 30%로 가정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경우로 공제한도는 충분한 것으로 가정)

자료: 보고서에 기재된 일본의 지분면세제도와 외국납부세액 규정을 참고하여 저자가 사례 작성

- 한편, 해외자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제도를 국외자회사 합산세제 적용대상까지 포함하는 경우, 배당으로 지불된 부분은 합산과세에서도 제외되고 배당의 수취시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sup>74)</sup>
- 2009년도 개정에서는 경과세국에 소재하는 해외자회사도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 해외자회사 합산세제를 일부 수정하는 형태로 두 제도의 관계를 조정함

74) 김재진·송은주·마정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p.51

- 개정 전에는 CFC가 벌어들인 소득 중 배당하지 않고 유보한 금액(이익잉여금)에 대해서만 합산과세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CFC가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하여 우선 합산과세를 한 뒤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서 경과세국의 자회사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익금불산입을 함
  - 단, 합산과세된 경과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이미 기과세된 금액이므로 95%가 아닌 100% 익금불산입함
  - 지분율요건을 만족하는지에 관계없이 해외자회사 합산과세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때까지의 수취 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됨
  
- 최종적으로 경과세국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일본 모회사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점은 개정 전·후에 변경이 없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그림 Ⅲ-5] 일본의 지분면세제도 도입 전·후의 CFC 과세 조정



자료: 김재진·송은주·마정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52

- CFC 소득에 대해 과세된 외국법인세액 중 과세대상금액 또는 부분과세대상금액에 대응하는 부분은 내국법인이 납부한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해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한편, 2016년 4월 1일부터 BEPS프로젝트 권고에 입각하여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배당(예: 호주의 우선주식 등)에 대해서는 지분면세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배당을 지급받은 일본 모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함
  - BEPS Action2의 혼성불일치 권고안을 수용하여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임

#### 다. CFC제도

##### 1) 2017년 개정 전의 일본의 CFC제도

- 일본의 CFC제도는 현저히 세율이 낮은 국가에 해외자회사를 두고 현지에서 유보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데 이를 막기 위하여 해외자회사 합산세제<sup>75)</sup>라는 명칭으로 1978년에 처음 도입됨
  - 일반적으로 일본 국내법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외국자회사 등의 소득은 배당으로 일본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음
  - 원칙적으로는 해당 배당에 대하여 일본의 실효세율에 따라 과세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됨 - 배당을 일본으로 송금할 때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로 공제되며, 외국자회사가 현지 과세관청에 지불한 법인세 중 일본으로 배당하는 분에 대한 것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

75) 일본의 CFC제도인 해외자회사 합산세제의 정식명칭은 '내국법인의 특정 외국자회사 등과 관련된 소득의 과세특례'임

- CFC제도가 적용되는 '내국법인'은 CFC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하는 내국법인을 의미함<sup>76)77)</sup>
  - 이러한 요건은 CFC 과세제도의 취지상 경영방침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소수주주는 조세회피의 위험이 높지 않은 측면을 고려한 것임
  - 2010년 법 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CFC 주식 보유비율 요건이 과거 5%에서 10%로 변경됨
    - 소수주주에 대해 CFC제도의 적용에 따른 신고서류 구비 등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과 2010년 부분과세 대상금액 익금산입제도 도입에 따라 내국법인의 자료수집에 따른 사무부담 증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임
  - '내국법인'은 ① 단독으로 10% 이상 지분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과 ② 10% 이상 지분요건을 충족하는 동족주주 그룹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 구분됨
    - 동족주주 그룹은 외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자 중 ① 하나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② 이들과 동족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함
    - 동족관계의 예로는 거주자의 친족이나 사용인, 내국법인의 임원, 내국법인의 임원이 지배하는 법인을 들 수 있음
  
- 외국자회사 합산세제는 내국법인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없거나 일본의 실효세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지분을 50% 초과한 피지배요건은 CFC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자기주식 제외)의 수나 금액뿐만 아니라 의결권의 수나 배당 기타 재산분배청구권에 기초해 받을

76) 홍범교·김태훈·마정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p.31

77)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6조 제1항

수 있는 잉여금의 배당액의 비율을 기준으로도 판단함

- 의결권이나 청구권의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하여 CFC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의결권의 수나 청구권에 기초한 잉여금의 배당액을 고려하게 된 것임

□ 경과세국은 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소득금액의 20%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함<sup>78)</sup>

- CFC 판정을 위한 외국자회사의 조세부담비율의 기준은 조세회피행위를 적절하게 방지할 필요성과 기업의 사무부담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질 필요가 있음
- 주변국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세부담 비율 계산과 적용제외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작업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제경쟁력 유지의 관점에서 일본 법인세 부담의 약 절반을 기준으로 대상국·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 조세부담비율의 기준을 20%로 인하하게 된 것임

□ 익금산입 시기는 특정 외국자회사 등의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2개월 경과하는 날을 포함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함<sup>79)</sup>

□ 다만, 전술한 해외자회사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특정 외국자회사 등이 독립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해당 소재지국에서 사업활동을 할 충분한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자회사 합산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적용제외요건인 4가지 면제테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80)</sup>

- 사업기준 테스트: 주식·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의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78)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의14조 제1항

79)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6조 제1항

80)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6조 제4항

- 실제 테스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에서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관리·지배기준 테스트: 특정 외국자회사가 주된 사업의 관리·지배 및 운영을 스스로 해야 함
    - 특정 외국자회사 등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의 개최, 임원으로서 직무집행, 회계장부의 작성이나 보관 등이 행해지는 장소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소재지국 기준 또는 비특수관계자 거래기준 테스트: 도매업,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보험업, 선박운송업, 항공기운항업의 7가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의 50% 이상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어야 함
    - 상기 7개 업종이 아닌 경우 주요 사업활동이 본점 소재지국에서 수행되어야 함
-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유보소득금액은 특정 외국자회사의 미처분소득 중 내국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임<sup>81)</sup>
- 일본 법령에 준거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특정 외국자회사 등의 현지 법령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고 한 번 선택하면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함
  - 또한, 유보소득 금액으로부터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유보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이후 7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합산대상이 되는 유보소득 금액은 송금한 배당금액 및 법인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적용제외요건 중 일부 요건의 미비로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못한 경우 직접 인건비의 10%를 공제하여 합산대상이 되는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함
- CFC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 중 합산과세대상금액에 대응하는 부분은 내국법인이 납부한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해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sup>82)</sup>
- 합산과세된 후 CFC가 실제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수취배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sup>83)</sup>

81)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6조 제2항

82)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7조 제1항

- 이때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과세대상연도 및 그 전 10년 이내 각 사업연도에 해당 내국법인에 대해 익금산입된 합산과세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 따라서 수취배당액이 기존 10년 내 합산과세소득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됨
- 해당 규정은 실질적으로는 지분비율이 25% 이상인 외국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CFC로부터 수취한 배당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 CFC의 지분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10년 내 합산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자회사 지분면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임
- 과세대상금액을 구하는 상기 내용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sup>84)</sup>

- 적용대상금액 = 일본 세법에 근거하여 CFC의 과세대상연도의 결산이익액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7년 내에 발생한 결손금액 - 과세대상연도에 납부하는 법인소득세액(환급액을 공제함) - 25% 이상의 자회사로부터의 수취배당 등의 금액
- 과세대상금액 = 적용대상금액 × 내국법인의 직·간접적인 청구권 감안 주식보유비율

- 2010년 세법개정에서는 수취배당의 원천이 이미 일본에서 과세된 손회사의 소득인 경우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이 신설됨
  - 해외손회사가 해외자회사를 경유해 내국법인에 지급된 잉여금의 배당 중 합산과세된 금액을 원천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

## 2) 최근 개정된 CFC제도 관련 사항

- 최근 일본은 OECD BEPS Action 3(효과적인 CFC규정의 설계) 권고안을 반영하여 CFC제도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수행함

83)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6의8조 제4항 제2호

84) 홍범교·김태훈·마정화, 『특정의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p.36

- CFC제도 개정안은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으며,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합산 판단 기준이 되는 조세회피 위험을 외국 자회사의 조세부담률이 단순히 2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에서 소득과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구조로 개정됨<sup>85)</sup>
  - 경제활동실체의 유무를 기준으로 능동소득과 수동소득으로 구분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경제활동실체의 테스트는 전술한 사업기준 테스트, 실제 테스트, 관리·지배기준 테스트, 소재지국기준이나 비특수관계자 거래기준 테스트임
  - 수동소득은 일정한 금융소득과 실질적 활동이 없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칙적으로 합산과세대상이며 능동소득은 경제활동의 실체가 있는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국외자회사의 세율에 관계없이 합산대상에서 제외됨
- 합산과세대상을 OECD 권고안을 반영하여 경제활동기준으로 변경하고, 경제활동 기준 충족 시 수동소득 합계액을 1천만엔에서 2천만엔으로 상향조정하여 CFC 적용배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sup>86)</sup>
  - 수동소득만 CFC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을 BEPS Action3의 경제활동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든 소득을 CFC 대상으로 하며,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수동소득만 CFC 대상에 포함
  - 경제활동실체가 없으면 능동적 소득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개정 전에는 각 사업연도 조세부담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CFC를 적용을 면제 하였으나, 조세부담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라도 페이퍼컴퍼니, 현금박스, 블랙리스트 기업 등에 해당되면 유효세율 CFC를 적용함<sup>87)</sup>

85) Akiyuki Asatsuma, "Japa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Surveys - 7. Anti-Avoidance," IBFD.

86)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17-0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24

87)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tax\\_policy/publication/brochure/zeisei17\\_pdf/zeisei17\\_04.pdf](http://www.mof.go.jp/tax_policy/publication/brochure/zeisei17_pdf/zeisei17_04.pdf), 검색일자: 2018. 7. 17

- 페이퍼컴퍼니, 현금박스, 블랙리스트 기업 등에 해당되면, 유효세율 30%에 미달하지 않는 한 CFC규정을 적용함
-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 III-6] 일본의 세법개정 전·후의 CFC 과세요건 비교<sup>88)</sup>

[개정 전] 조세회피 위험을 외국 자회사의 조세부담률(20% 미만)등으로 파악

외국 자회사의 조세부담률	회사로서 경제활동 실체판정	소득구분		자산성 소득 (이자 배당 사용료 등)	기타 (사업소득 등)
		경제실체×	경제실체○		
20% 이상	제도 대상 제외				
20% 미만	없음(적용제외기준 미달)				
	있음(적용제외기준 충족)				

주: 음영부분이 일본 모회사의 소득으로 간주해 합산과세됨

[개정 후] 조세회피 위험을 외국 자회사의 소득의 종류 등으로 파악

회사로서 경제활동 실체판정	소득구분		수동 소득		능동 소득		적용면제기준 (외국 자회사의 세율)
	이상 소득 <sup>1)</sup>	경제실체×	이자·배당·사용료 등 경제실체×	기타 (사업소득 등) 경제실체○			
페이퍼 컴퍼니에 해당						30% 이상	
현금박스에 해당 <sup>2)</sup>						30% 이상	
경제활동기준 불충족 <sup>3)</sup>						20% 이상	
경제활동기준 충족 <sup>3)</sup>			4)	4)		20% 이상	

- 주: 1) 이상소득은 외국 자회사의 자산과 인력의 경제 실태에 따라 그 사업에서 보통 발생할 수 없고 발생근거가 없다고 간주되는 소득으로, 경제활동기준을 통과하고 회사의 실체가 있다고 판정된 외국 관계회사의 부분합산대상의 한 항목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외국 관계회사에 대해서 합산대상으로 적용됨
- 2) 현금박스는 총자산대비하여 수동적인 소득의 비중이 높은 사업체임. 구체적으로는 총자산액에 대한 일정한 수동적 소득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30%를 넘는 외국 관계회사(총자산액에 대한 유가증권, 대부 용도로 제공하고 있는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합계액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외국 관계회사)
- 3) 경제활동 기준은 외국 관계회사가 소득을 얻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4개의 기준
- 4) 외국 자회사의 소득을 능동, 수동 구분(조세부담률이 20% 이상 외국자회사에 대해서는 면제)

88)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17-0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23

## 4. 영국

###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 1) 기본 적용 대상<sup>89)</sup>

- 영국은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소득의 원천별, 항목별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세액공제의 한도를 계산함
  - 납세자는 세액공제 대신 손금산입을 선택할 수 있음
  
- 영국 법인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해당 해외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공제 가능함
  - 원천 요건(source rule):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이익이 당해 외국세액을 과세한 국가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함
  - 세액공제대상 범위 기준(basis of allowance of credit): 기본적으로 해당 소득과 같은 소득에 대하여 영국에서 부과되는 조세에 준하는 성격의 과세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은 영국 거주 법인이어야 함
  
-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서 납세자가 해당 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것이어야 함
  - 납세자가 관련 세액의 최소화를 위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해 추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함

89) B.R. Obuoforibo, A.M. Bal & J-E. D'Auvergne, "United Kingdom-Corporate Taxation-Country Analyses-7. International Aspects,"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collections/cta/html/cta\\_uk\\_s\\_007.html&WT.z\\_nav=outline&hash=aninvalidhash](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collections/cta/html/cta_uk_s_007.html&WT.z_nav=outline&hash=aninvalidhash), 검색일자: 2018.7.17.

- (예시) 영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수취하면서 25%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세를 납부하였으나, 동 영국 법인은 네덜란드 법인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5%의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었음.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액 10%(=25%-15%)에 해당하는 원천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최종 확정된 세액으로서, 가산세 또는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sup>90)</sup>

- 영국은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배당에 대해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일정 요건하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함
  - 영국 법인이 외국자회사의 통제력 있는 지분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할 것
  - 세액공제대상 출자단계에 대한 별도의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가능
- 배당이 관련 순이익(relevant profits)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납부한 법인세액과 배당금액에 관련 세금을 가산(gross-up)한 금액에 해당하는 영국에서의 세액 중 작

---

90)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164370>, 검색일자: 2018.6.20.; Taxation(International and Other Provisions) Act 2010 Section 58, Section 59; B.R. Obuoforibo, A.M. Bal & J-E. D'Auvergne,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영국 국세청, <http://www.hmrc.gov.uk>, "INTM164120-UK residents with foreign income or gains: dividends: Underlying tax - computation of relevant profits,"

은 금액을 한도로 함

- 관련 순이익은 소재지국의 법상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법 이외의 적립금의 처분 전 이익임
- 이전기간의 이익이 다음기간에 배당되는 경우에도 배당이 지급되는 직전 사업연도의 이익이 적용되고 배당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전연도의 이익을 대응시킴

### 3)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sup>91)</sup>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으로서 다음의 둘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
  - 당해 외국납부세액
  - 당해 소득에 대해 영국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각 소득의 원천(source)별로 계산하며, 다른 종류의 소득이나 국가 발생분을 합산하지 아니함
  - 해외사업장의 소득은 하나로 통산하여 적용되며 통산된 소득이 손실인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외국납부세액 공제가능 총액은 해당 영국 법인이 납부할 총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외국납부세액이 영국 법인에 대한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음
  - 특정 사업연도에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기간 제한없이 이월공제할 수 있으며, 또한 직전 1개년에 걸쳐 소급공제할 수 있음

91) 영국 국세청, <http://www.hmrc.gov.uk>, "INTM163040 - UK residents with foreign income or gains: income arising abroad: Branch profits - unrelieved tax,"

## 나. 국외배당소득면제<sup>92)</sup>

- 영국은 2009년 7월부터 법인주주가 받은 배당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하고 있음
  - 2009년 7월 이전에는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지분율 10% 이상 보유 시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도 허용하였음
  
- 배당소득면제방식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해외소득의 국내환류 촉진 및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구축 목적의 일환임<sup>93)</sup>
  -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사업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강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됨
  - 국제적 세율 인하 경쟁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의 영국 투자 유인이 떨어지고 해외소득의 본국 송금이 둔화됨
  - 다국적기업들의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세액공제방식 적용 시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영국은 기업들에 보다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를 적용할 것을 목표로 배당소득면제 도입을 추진함
  
- 영국의 지분면세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sup>94)</sup>에 따르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을 통한 송금액이 증가하였음이 확인됨
  - 한편, 다른 선행연구<sup>95)</sup>에서는 국내 환류된 배당송금액이 다국적기업의 국내 투

92) B.R. Obuoforibo, A.M. Bal & J-E. D'Auvergne,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93) 송은주·마정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국외소득면제방식 도입방안』, 한국세무학회, 2012.

94) Egger Merlo Ruf Wamser, "Consequences of the new UK tax exemption system: evidence from micro-level data," *The Economic Journal*, 2015.1.

95) Li Liu, "The Effects of UK's Switch to Territoriality on Domestic and Outbound Investment: Evidence from Micro-Level Data," 2014.4.

자료 이어진다는 유의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함

- 영국은 원칙적으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면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 특정 해외 국가에서 배당 원천세율을 경감하는 조건으로 모회사 소재국에서 배당수취액이 과세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방식에 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음
  
- 기업규모에 따라 수취한 배당금에 과세면제를 허용하는 조건이 다르게 적용됨
  - 기업규모는 소기업인지 중소·대기업인지에 따라 조건을 달리 적용하며, 소기업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이면서 연간 총매출액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이 1천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을 말함
  - 소기업의 경우 해외자회사와 관련된 문제가 복잡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세액공제 체계를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아 주로 중소·대기업을 위주로 소득면제 방식을 설계하였음<sup>96)</sup>
  
- 중소·대기업의 경우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배당소득에 대해 100% 과세 면제함
  - 첫째, 배당금이 5가지 '면제유형(exempt classes)'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96) 송은주·마정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국외소득면제방식 도입방안』, 한국세무학회, 2012.

〈표 III-7〉 영국 배당소득 과세 면제유형

No	배당금 과세 면제유형
1	피지배회사(controlled company)로부터 받은 분배금
2	비상환 보통주(non-redeemable ordinary shares)로부터 받은 분배금
3	포트폴리오 보유와 관련한 분배금: 배당금 수령인이 지분의 10% 미만을 보유하고 있고, 분배가능이익의 10% 미만을 받을 권한이 있으며, 청산 시 분배가능자산의 10% 미만을 받을 권한이 있는 주식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4	감세를 의도하지 않은 분배금: 감세를 목적으로 발생한 이익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분배한 금액
5	부채 성격을 가진 주식의 배당금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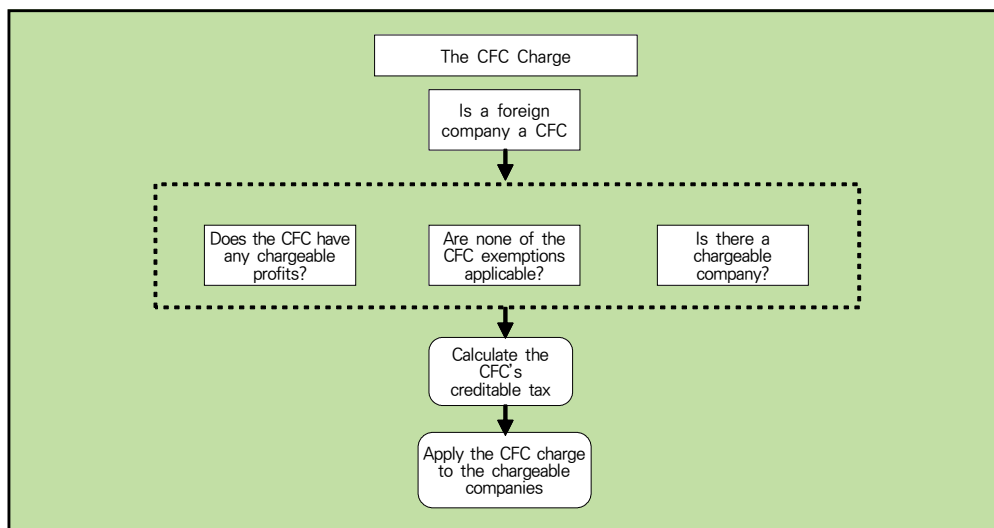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653020>, 검색일자: 2018.7.18.

- 둘째, 이익의 분배 성격의 지급액이 아닌 경우(예: 이자)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함
  - 셋째, 분배금과 관련하여 비거주자(foreign residents)에게 어떠한 공제도 허용되지 않아야 함
  - 넷째, 각 면제유형과 관련된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 소기업의 경우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배당소득에 대해 100% 과세면제
- 첫째,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가 영국 거주자 또는 적격지역(qualifying territory) 거주자이거나 이중국적자가 아니어야 함
    - 적격지역은 영국이 이중과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를 말함
  - 둘째, 이익의 분배 성격의 지급액이 아닌 경우(예: 이자)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함
  - 셋째, 분배금과 관련하여 비거주자(foreign residents)에게 어떠한 공제도 허용되지 않아야 함
  - 넷째, 분배금은 조세혜택(tax advantage)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 다. CFC제도

- 영국의 CFC제도는 기본적으로 특정 외국법인 해당 여부의 판정, CFC 소득의 범위 확정 및 과세대상 소득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적용이 확정되는 체계로 이루어짐

[그림 III-7] 영국 CFC제도의 적용 체계<sup>97)</sup>



### 1) CFC 범위<sup>98)</sup>

- 특정외국법인은 영국 이외의 해외 거주 법인으로서 당해 영국 거주자가 지배하는 외국회사를 의미함

97)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191100>, 검색일자: 2018.7.18

98)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191100>, 검색일자: 2018.7.18

- 영국 거주자의 지배 권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검토하여 이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지배권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CFC로 간주함
  - 법적 지배(legal control): 주식 소유 정도 및 법적 근거 문서 등을 종합하여 당해 영국 거주자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 경제적 지배(economic control): 당해 영국 법인이 '경제적' 관점에서 외국법인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 당해 영국 법인이 충분한 법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제적 지배권을 가질 수 있음
    - 이익분배 수령권, 당해 외국법인 처분이나 청산 시 자산 배분권 등을 통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득(economic benefit)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회계상 지배(accounting control): 외국법인이 CFC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영국 법인이 모회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기준 또는 정의를 참고할 수 있음
  
-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등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 CFC로 간주될 수 있음
  - 공동 소유자 중 1인이 영국 거주 법인으로서 최소 4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소유자들이 영국 비거주자로서 당해 외국법인 지분의 40%에서 55%에 해당하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2) CFC 제외 범위<sup>99)</sup>

- CFC 과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법인 단계(entity level)에서의 면제 요건이 존재하며 이는 당해 CFC 전체적 관점에서 적용 여부를 판단함

---

99)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224000>, intm224100, intm224700, 검색일자: 2018.7.18.

- 일정기간 면제(temporary exempt period exemption): 해당 외국법인이 영국 법인의 지배권에 포함되기 시작한지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CFC 과세를 면제함
- 특정지역 관련 면제(the excluded territories exemption): CFC가 소정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함
  - 당해 과세기간에 세무상 이점이 있는 소득(tax-advantaged income)의 총 합계액이 5만파운드를 넘거나 CFC 회계상 이익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이전 6개 사업연도 동안에 주요 지적재산권 이전 거래가 없을 것 등
- 저소득 관련 면제(the low profits exemption):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제 가능
  - 당해 과세연도 CFC의 순이익(profit)이 연간 5만파운드 이하인 경우
  - 당해 과세연도 CFC의 순이익이 50만파운드 이하인 경우로서 그 중 상거래 이외 소득(non-trading income)이 5만파운드 이하일 경우
- 저이익률 관련 면제(the low profit margin exemption): 당해 과세연도의 CFC 소득(이자비용 공제 이전)이 당해 외국법인 운영경비(operating expenditure)의 10% 이하일 경우
- 조세부담 수준 관련 면제(the tax exemption): 당해 CFC가 자국에서 낸 세금(양도소득관련 제외)이 이에 상응하는 영국 세금의 75% 이상일 경우

### 3) CFC 소득 해당 범위<sup>100)</sup>

- 외국법인에 대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소득이 아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CFC 과세의 기본적 적용 대상이 됨
  - 당해 외국법인이 영국에서의 사업활동(UK activities)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을 가질 것

<sup>100)</sup>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200100>, intm194300, 검색일자: 2018.7.18.

- 당해 외국법인이 상거래 이외의 소득을 포함할 경우
  - 당해 외국법인 소득 중 금융거래이익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 중에 자가종속보험업(captive insurance business)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외국법인 소득이 특정 금융기관 자회사와 관련된 것일 경우
- (요건 1) 당해 외국법인이 속한 그룹 또는 그와 연관된 기업이 영국 내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자산 또는 위험사업(risks)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CFC 과세대상으로 봄
- 당해 자산이나 위험사업이 영국 및 기타 지역과 동시에 연관될 경우, 영국 관련 비중이 절반 이하일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CFC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당해 상거래 활동이 영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CFC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이 경우는 고정사업장 규정에 따라 영국에서 종국적으로 과세되므로 CFC rule 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고 제3자와의 거래와도 유사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CFC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상업적, 비조세적 관점에서 볼 때 해당 거래 체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해 영국 관련 거래가 해당 외국법인의 관계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이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동등한 조건하에 거래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이외에도 당해 외국법인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CFC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항구적 성격의 사업장을 해당 국가에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사업활동이 이러한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할 경우
    - 상거래 소득 중 영국에서 발생한 비중이 20% 이하일 것
    - 영국과 관련된 사업비용(management expenditure)이 전체 해당 비용의

20% 이하일 것

- 해당 소득 중 상당 부분이 영국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이전받은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아닐 것
- 당해 사업소득 중 영국으로부터 수출된 재화로부터 발생한 부분이 20% 이하일 것

□ (요건 2) 상거래 이외 소득은 주로 배당이나 이자 등의 수동소득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 요건에 해당할 경우 CFC 과세대상으로 봄

- 당해 소득이 영국 내에서 이루어지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일 경우
- 동 소득이 영국에서 비롯된 펀드의 사용이나 투자로부터 발생한 경우
- 동 소득이 당해 외국법인이 영국의 관계회사나 타국 관계회사의 영국 고정사업장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배당이나 기타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목적보다는 조세 목적상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전제함
- 영국 내 특수관계자와의 특정 금융리스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인 경우

□ (기타 요건) 금융거래 소득이나 기타 보험업 거래 등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CFC 과세대상으로 봄

-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초과자본(excess free capital or assets)을 사용하여 얻은 투자수익으로서 해당 초과자본이 영국과 관련된 주식발행이나 기타 자본출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될 경우 CFC 과세대상 소득으로 봄
- 자가종속보험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영국 내 위험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일정 소득은 CFC 과세대상 소득으로 봄

#### 4) CFC 소득공제 및 과세소득 결정<sup>101)</sup>

- CFC 과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총소득을 결정한 이후에는 이로부터 비용공제 등을 한 후의 과세대상 소득(assumed taxable total profit)을 산정함
  - 당해 총소득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간주되는 한도 내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른 방법을 적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당해 외국법인의 총소득 중 상기 CFC 과세대상으로 인정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하여 전체 관련 비용 중 일부를 공제함
    - 일례로, CFC 소득에 대한 세부요건상 전체 외국법인 소득 중 25%만이 CFC 과세대상이 된 경우, 전체 외국법인 소득에 대응되는 비용 중 25%만을 해당 CFC 적용대상 소득에서 공제함
  
- 사업 관련 비용이나 결손금 등은 해당 소득의 범위나 연관성을 감안하여 공제 가능함
  - 일반적으로 운영 및 관리 비용(management expense)은 CFC 대상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됨
  - 사업상 결손금 공제는 해당 외국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CFC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 소득항목 내에서 공제 가능함
    - 특히 전적으로 영국 이외에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전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CFC 과세대상 소득 및 납부세액공제액은 당해 외국법인과 관련된 당사자(relevant person)에게 배분(apportionment)됨
  - 외국법인 관련 당사자는 당해 과세연도 중 그 어느 시점에라도 당해 외국법인에

101)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239000>, intm233000, 검색일자: 2018.7.17

대한 관련 지분(relevant interest)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를 의미

- 지분 보유 관련 당사자들 중에서도 당해 외국법인 소득의 최소 25% 이상이 귀속 가능한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CFC 적용이 가능한 이해관계자로 간주함
  - 직접 소유 지분 및 관계사를 통해 보유한 지분을 합하여 산출함
- CFC 소득은 관련 지분을 보유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배분하지만 이 중 CFC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은 영국 거주 법인에 한함
  - 관련 지분 보유 당사자들 중에서 여러 단계의 영국 법인이 개입될 경우 보다 직접적이고 하위 단계에서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간주함
    - 예시) 영국 법인 A가 외국법인 C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영국 법인 B가 법인 A를 통해 외국법인 C에 대한 관련지분을 가지게 될 경우, 영국 법인 B를 제외하고 법인 A를 해당 외국법인 C에 대한 CFC 납세 의무자로 봄

##### 5) CFC 소득 관련 이중과세 배제<sup>102)</sup>

- CFC로 간주된 법인은 영국 세법 목적상 영국 거주자로 취급되며 동 법인이 해외에서 해당 CFC 소득에 대해 과세된 금액은 영국 세법상 공제 가능함
  - 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CFC 소재지국과의 조세조약상 이중과세배제 대상이거나 영국 국내법상 이중과세방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CFC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간주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동 소재지국 법령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의미함

102)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230100>, 검색일자: 2018.7.17

## 5. 독일

### 가. 외국납부세액공제<sup>103)</sup>

- 독일은 이자, 로열티 등 기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배제함
  - 동 세액공제는 독일 내국법에 의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대 국가와 관련된 경우라도 적용 가능함
  - 지분을 10% 미만의 포트폴리오 투자 등 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함
  
- 공제대상 세액은 외국에서 실제 납부의무가 있는 세금으로서 독일의 개인소득세나 법인소득세에 준하는 것이어야 함
  -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동 납부세액이 독일 세법에 의한 세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비용공제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독일에서의 산출세액(German tax payable)을 한도로 함
  - 외국납부세액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음

$$\text{공제한도} = \text{독일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액} \times \text{국외원천소득} / \text{국내외 총과세소득}$$

  - 공제가능한도는 각 국가별로 계산함

103) A. Perdelwitz, "Germany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 당해연도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소급공제 및 이월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연도에 독일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함
  -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 의할 경우 이중과세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세액공제방식 대신 소득공제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음
  - 세액공제방식 대신 소득공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일반적인 비용 공제항목으로 간주됨
  - 이에 따라 당기 과세표준이 결손일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어 차기로 이월 가능함
    - 결손 등의 사유로 세액공제 한도가 매우 낮게 될 경우 소득공제방식이 유리할 수 있음
  
- 독일은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체결 내용에 따라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독일은 그리스, 중국, 아르헨티나 등 약 20여 개 국가들과 조세조약상 관련 규정을 두고 이들로부터의 배당, 이자, 로열티 등 해당 소득에 대해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나. 국외배당소득면제<sup>104)</sup>

### 1) 도입 배경 및 변천

- 독일은 2000년도까지는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령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외국 납부세액공제방식을 사용해 왔음
  - 개인소득세 목적상으로는 주주귀속법(imputation)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였으며, 개인주주와 법인주주,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배당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이중과세 조정체계를 활용하였음
  -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하에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도 적용하였음
    - 해당 결산일 이전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독일 모회사가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
  
- 과세제도를 보다 간명하게 하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는 배당소득에 대한 국외소득면제 방식을 도입하였음
  - 주주귀속법 등의 공제방식은 폐쇄경제 체제에서는 완전하게 작동하지만 다양한 개방경제 상황에서는 모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직·간접 세액공제 등 관련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할 우려도 제기됨
  - EU의 지침 또한 배당소득면제를 지지하는 등의 추세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편함
  - 개인 및 법인주주, 국내 및 해외 주주 등의 구분과 무관하게 모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방식을 적용하여 제도를 간명하고 일관되게 적용함

---

104) IBFD, [https://online.ibfd.org/kbase/#WT.z\\_nav=Navigation&topic=doc&url=/collections/gtha/html/gtha\\_de\\_s\\_006.html&hash=gtha\\_de\\_s\\_6.1.4.](https://online.ibfd.org/kbase/#WT.z_nav=Navigation&topic=doc&url=/collections/gtha/html/gtha_de_s_006.html&hash=gtha_de_s_6.1.4.), 검색일자: 2018.7.17.; Miyuki Ueda, "Corporate Taxation of Dividends: A Comparison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German System," 2009.

-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지분율 요건 등에 상관없이 배당소득면제를 매우 폭넓게 적용하였음
  - 모회사의 최소지분율 보유 요건, 지분 보유기간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지분면세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였음
  
- 2013년 및 2014년도의 관련 세제 개편에 따라 지분율 보유 요건 등의 추가적 제약 조건이 발효됨
  - 독일 모회사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도입됨
  - 단, 소득의 원천지, 지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제약은 없음
  - 이중비과세 방지를 위하여 배당지급 회사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됨

## 2) 현행 규정

- 지분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독일 모회사는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면제 적용이 가능함(participation exemption)
  - 독일 내국법상,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을 위해서는 독일 모회사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함
  - 지분율 10% 미만의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의 배당 또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단기 이익실현 목적상 보유하는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함
  - 2014 과세연도부터 상기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 배당금이 당해 해외 자회사 단계에서 공제 가능한 사업비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correspondence principle)
  
- 다만 지분면세제도의 적용 범위는 총배당액의 95%로서 일부 이중과세 부담이 있음

- 해당 배당수령액의 5%는 손금불산입 대상 비용으로 간주하므로 사실상 동 배당금의 95%만 소득면제되는 효과를 가져옴
    - 다만 실제로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
  - 한편,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국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별도의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음
- 
- 독일은 자회사의 배당에 대해서 익금불산입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손자회사 등이 부담한 법인세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없음
  
  - 독일 법인의 해외자회사 이외의 해외 사업장에서 부담한 국외 세액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 과세규정이 적용되며, 조세조약 체결 내용에 따라 독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함
    - 일반적으로 독일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해외 부동산이나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독일에서 비과세하고 있음
    - 조세조약상 독일에서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함

#### 다. CFC제도<sup>105)</sup>

- 독일 세법은 소득 및 재산을 해외경과세국에 두고 거주지국 과세를 회피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CFC규정을 두고 있음
  - 독일의 CFC 세제는 1972년에 도입되었으며, 수동적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지배율 요건을 보다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1992년에 도입하는 등 관련 세제를 보완해 왔음

---

105) Andreas Perdelwitz, "Germany-Corporate Taxation-Country Analyses-7. International Aspects," IBFD.; Martin Weiss, "Recent Developments in the German Tax Treatment of CFCs, European Taxation," 2015.

- 특정외국법인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독일 거주자가 지배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경과세국에 수동적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함
  - 외국법인에 해당할 것
  -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독일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의결권의 다수를 보유할 것
  - '능동적 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수동적 소득을 얻을 것
  - 당해 소득이 해당 외국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25% 미만의 저세율로 과세될 것

### 1) CFC 적용 외국법인의 의미

- 외국법인은 일반적인 독일 법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것이어야 하며 파트너십 형태는 특정외국법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동 외국 실체가 법적·경제적 관점에서 독일 법인에 준하는 유사한 법적 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함<sup>106)</sup>
  - 당해 외국 실체의 정관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실체가 독일의 파트너십과 유사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CFC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 해당 실체가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적 근거지 기준 및 실질관리지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하며, 이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야 외국법인으로 인정됨
  - 당해 실체의 법적 등록지가 독일 이외의 국가이어야 함
  - 동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 또한 독일 이외의 국가일 것

### 2) 지배력 기준

- 내국법인 등 독일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sup>106)</sup> Blümich(2008), sec.7 AStG para. 14;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Justice)이 소위 '유사유형(Typenvergleich)'의 개념을 설정함, case IX R182/87, BeckRS 1992, 222010354

이는 주로 의결권에 대한 보유 비율로 판단함

- 일반적으로 독일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의 지분(capital) 또는 의결권(voting right)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다만 해당 외국법인의 자본이나 의결권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바탕으로 판정함<sup>107)</sup>
  - 지분율 등 지배력 보유 여부는 당해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판정함
  -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보유 비율은 직접 투자비율뿐만 아니라 중간단계 주주를 거친 간접적 투자도 포함하여 판정함
  - 또한 지배력 보유기준 초과 여부는 모든 독일 거주자의 직·간접 지분율을 합산하여 판정함
    - 개별 독일 법인이나 거주자의 지분율은 50% 미만이라도 이들의 합계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봄
- 일반적 지배력 요건의 예외규정으로서, 특정외국법인이 '투자활동의 성격을 가진 소득(Zwischeneinkünfte mit Kapitalanlagecharakter)'을 획득할 경우에는 지분율이 낮더라도 CFC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투자활동'의 범위는 채권, 증권, 주식 등의 금융자산 보유 및 관리활동을 의미하며, 능동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천과 경제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활동을 뜻함<sup>108)</sup>
    - 실질적으로 동 규정은 대부분 특정외국법인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 적용됨<sup>109)</sup>
  - 이러한 투자활동 소득에 대해서는 독일 거주자가 보유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율이 1% 이상일 경우 CFC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sup>110)</sup>
  - 또한 특정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의 대부분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일부 경우에는 지분율 1% 미만인 경우에도 CFC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sup>111)</sup>

107) 독일 「국제조세법」 §7(2)3문

108) 독일 「국제조세법」 §7(6a)

109) Kraft(2009), sec.7, para. 270.

110) 독일 「국제조세법」 §7(6)1문

-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이 증권거래소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CFC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3) 수동적 소득

- 독일 세법<sup>112)</sup>에서는 CFC규정과 관련하여 '능동적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동적 소득이 CFC규정 적용 대상이 됨
  - 능동적 소득의 예로는 농림업, 제조업 등의 실물 사업활동을 들 수 있으며, 서비스업 등은 일반적으로는 능동적 활동에 해당하되 세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규정하고 있음
    - 농업 및 임업, 유형자산의 제조·가공·조립, 에너지 개발 및 광물 탐사·추출 등이 능동적 소득의 대표적 경우에 해당함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는 능동적 소득이지만 일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서는 수동적 소득으로 분류하는 예외를 두고 있음
  - 위와 같은 능동적 소득 항목에 해당한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동적 소득으로 간주되어 CFC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정외국법인의 능동적, 수동적 소득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sup>113)</sup>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법적 불확실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됨
  - 특정외국법인의 소득이 일률적으로 능동적 또는 수동적 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흔하지 아니함
  - 기능적 관점을 적용할 경우, 유형별 소득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상호 관련된 활동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유형을 결정하게 됨

111) 독일 「국제조세법」 §7(6)3문

112) Section 8(1) of the FTTA

113) Blümich(2008), sec. 8 AStG; Kraft(2009), sec. 8, para. 30 et seq.

- 부수활동은 주된 사업에 배분되어야 함<sup>114)</sup>

-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 수동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한도 이하의 소규모 소득에 대해서는 CFC규정 적용이 면제될 수 있음
  -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적 소득 총액이 8만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동 법인의 전체 소득 중 수동적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 CFC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4) 경과세국

- 독일의 CFC 세제는 조세피난처로 특정 국가나 지역을 지정하지는 아니하며, 해당 수동적 소득에 대하여 당해 국가에서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CFC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경과세국 여부를 결정함
  - 당해 외국법인이 취득한 수동적 소득이 동 외국에서 실효세율 2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함<sup>115)</sup>
  - 경과세국 여부를 결정하는 실효세율 기준은 1972년 30%에서 2001년에 25%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음
  
- 동 실효세율 판정은 외국법인의 소득을 독일세법에 따라 산출한 것을 바탕으로 하며, 주주 단계에서의 세액공제나 환급액까지 고려하여 산출함
  - 실효세율은 당해 외국법인의 수동적 소득에 대해 동 국가에서 부과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산출함
    - 해당 과세표준은 독일 세법상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함
  - 2010년 세법개정 이후에는 실효세율 판단 시 법인단계에서는 고세율이더라도 주주 단계에서 세액공제나 환급으로 인해 사실상 저율 과세되는 경우도 CFC규

114) Kraft(2009), sec.8, para. 33.

115) 독일 「국제조세법」 §8(3)

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됨

- 일례로, 몰타에 자회사를 둔 경우 몰타의 법인세율은 25%를 넘지만 몰타 법인의 주주들은 기납부 법인세액의 상당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주주 단계에서의 세액환급까지 고려할 경우 사실상 실효세율이 25% 미만에 해당하며, 이 경우 CFC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5) 과세대상 소득 결정

- 특정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독일 세법상 기준에 대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에 비례하여 독일 주주에 귀속되는 부분을 산정함
  - 당해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은 독일 세법상 기준에 따라 세무조정을 거쳐 수정, 확정됨
  - 독일 세법에 따르면 해당 주주는 CFC 소득을 일반적인 회계장부 기장 원칙에 따라 산출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입출 기준에 따라 계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당해 외국법인의 CFC 소득이 손실일 경우에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과세소득은 없으며, 동 손실은 차기로 이월되어 향후 CFC 소득에서 공제 가능함
- 주주 단계에서 CFC 소득은 자본소득(income from capital)으로 분류되며 내국 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됨
  - 당해 외국법인의 과세연도 종료 시점에서 즉시 동 내국법인 주주의 법인세 과세 소득으로 간주됨
  - 해당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독일 법인세율 15% 및 연대세(solidarity surcharge) 5.5%가 적용됨
- 내국법인 주주의 과세소득으로 간주된 CFC 소득에 대해서는 국외배당소득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함

Ⅲ.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의 국제동향 및 주요국의 제도 91

- CFC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보다도 관련 내국세법이 우선 적용되며 국외배당 소득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이에 따라 CFC 소득은 내국법인 주주에 귀속되어 바로 과세되며, 동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함
- 내국법인 주주에 대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국외배당소득면제 규정을 적용함
- 이 경우 배당액의 95%가 과세 면제됨(5% 해당 부분은 이중과세 문제가 잔존함)

## IV. 국제비교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및 CFC제도에 대하여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요약·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IV-1〉 이중과세조정제도 및 CFC제도의 국제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b>1. 개요</b>					
이중과세조정제도	•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배당소득은 국외 소득면제방식)	•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배당소득은 국외 소득면제방식)	•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배당소득은 국외 소득면제방식)	•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배당소득은 국외 소득면제방식)
손금산입	• 손금산입 방식 선택 가능	• 손금산입 방식 선택 가능	• 손금산입 방식 선택 가능	• 손금산입 방식 선택 가능	• 손금산입 방식 선택 가능
<b>2. 배당소득 관련</b>					
국외 배당 소득	•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	• 국외소득면제	• 국외소득면제	• 국외소득면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선택가능)	• 국외소득면제
비율	• N/A	• 100%	• 95%	• 100%	• 95%
적용 요건 및 범위	(세액공제요건) • 지분율 25% • 6개월 이상 보유	(소득면제요건) • 지분율 10% • 1년 이상 보유	(소득면제요건) • 지분율 25% • 6개월 이상 보유	(소득면제요건) • 지분율 10% • 보유기간요건 없음	(소득면제요건) • 지분율 10% • 보유기간요건 없음
<b>3. 외국납부세액공제</b>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공제 대상 세액	• 소득에 비례하여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	• 소득에 비례하여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	• 소득에 비례하여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	• 소득에 비례하여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	• 소득에 비례하여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
공제 한도	• 전체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기여한 부분  • 국가별 한도	• 전체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기여한 부분  • 소득유형별 한도	• 외국납부세액을 발생시키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  • 일괄 한도	•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영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  • 소득원천별 한도	• 전체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기여한 부분  • 국가별 한도
이월 규정	• 한도초과분 5년간 이월가능 (단, 직·간접비용 차감에 따른 초과분은 이월불가)	•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 가능 • 1년간 소급공제 가능	• 한도초과분 3년간 이월 가능 • 한도여유분도 3년간 이월 가능	• 한도초과분 무기한 이월 가능 • 1년간 소급공제 가능	• 한도초과분 이월 및 소급 공제 불가

4. CFC 관련 규정

소득 이전 방지 제도	• CFC규정	• CFC규정 • 저세율 과세 무형 자산 소득 추가과세 신설	• CFC규정	• CFC규정	• CFC규정
지분 율등 적용 요건	• 주주요건: 직·간접 10% 이상 지분 보유한 내국법인 • 피지배회사요건: 국조법상 특수관계자	• 주주요건: 직·간접 10% 이상 지분 보유한 내국법인 • 피지배회사요건: 직·간접 50% 초과 보유 외국법인	• 주주요건: 직·간접 10% 이상 지분 보유한 내국법인 • 피지배회사요건: 직·간접 50% 초과 보유 외국법인	• 주주요건: 직·간접 25% 이상 지분 보유 • 피지배회사요건: 법적지배, 경제적 지배, 회계상 지배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 주주요건: 직·간접 10% 이상 지분 보유한 내국법인 (특정투자소득은 1%) • 피지배회사요건: 직·간접 50% 초과 보유 외국법인
소득 구분 규정	• 법문상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운영을 하며, 그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 배제	• 과세대상인 수동 소득을 법조문 'Subpart F'에 상세히 규정	• 사업기준, 실체기준, 관리지배기준, 소재지국 및 비특수관계자 거래 기준의 4가지 면제 테스트로 구분	• 소득유형별로 별도의 상세한 소득 구분기준을 적용	• 능동소득을 유형별로 열거 • 그 외 소득을 기능적 관점 적용으로 유형별 소득을 개별적으로 구분함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적용 면제 세율	• 15% 초과	• 미국 법인세율의 90% 이상	• 20% 초과 면제 (특정법인 30%)	• 영국 세부담액의 75% 이상	• 25% 이상 면제
적용 면제 금액	• 2억원 이하	• 1백만달러 이하	• 2천만엔 이하	• CFC 순소득 5만 파운드 이하	• 8만유로 이하 • 수동소득 비율 10% 이하
결손 상계 규정	• 없음	• CFC 소재국 특수 관계법인 전기 결손을 이용 공제 가능	• CFC소득이 결손인 경우 7년간 이월공제 가능	• 결손금은 CFC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와 대응하는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	• CFC 소득이 결손인 경우 이월공제 가능

자료: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 1.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비교

-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사대상국 모두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으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조사대상국 모두 국외소득 면제방식을 적용함
  - 단,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조사대상국 모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액공제 대신 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미국, 일본, 독일은 배당소득에 대한 국외소득 면제방식의 도입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유지되고 있음
  - 배당소득의 소득면제 비율은 미국과 영국이 100%이고, 일본과 독일은 95%임
    - 일본과 독일의 경우 배당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모회사의 비용이 일부 자국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5%에 한해서는 소득면제 제외규정을 두고 있음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요건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분율이 25% 이상으로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에 한하며, 독일과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요건은 오히려 엄격함
  - 미국은 지분율 10% 이상으로 1년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면제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지분율 25% 이상 배당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소득에서 면제해주고 있음
  - 영국과 독일은 지분율 10% 이상의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별도의 보유기간 요건은 없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자회사에 대한 현지 법인세 부담분만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의 선택이 가능한 영국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자회사의 법인세 부담분뿐만 아니라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까지도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줌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조사대상국은 모두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을 원칙적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의무적으로 부과된 조세로 정의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수익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이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담한 금액은 공제대상 세액에서 제외됨
  
-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사대상국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한도를 두고 있으며 공제한도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며, 상세한 계산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우 국가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 한편,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유형별 및 소득 원천별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국가별로 관리하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나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일본의 경우 한도 초과분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한도 여유분에 대해서도 3년간 이월이 가능함
  - 미국의 경우에는 소득유형별로 1년간 소급공제가 가능하며,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영국의 경우에는 동일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1년의 소급공제와 무기한의 이월공제를 적용함
  - 독일의 경우 이월 및 소급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과 달리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조정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규정의 복잡성과 국내에서의 추가과세 가능성으로 인해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유입을 저해할 여지가 있음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되므로 고세율국의 경우 한도에 걸려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제한도가 충분한 경우라도 우리나라보다 저세율국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세율만큼 추가과세가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지분면세제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여 배당재원의 국내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배당재원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고 있는바, 배당재원을 벌어들인 시점과 해당 사업연도의 현지 납부한 법인세를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등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계산이 복잡함
  
-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의 적용 요건을 비교하여 보면 지분율, 보유기간, 공제 범위 등에서 우리나라의 규정이 비교적 엄격한 편에 속함
  - 우리나라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을 조사대상국의 지분면세제도와 비교하면, 지분비율 요건이 25%로 우리와 지분비율 요건이 동일한 일본을 제외한 미

국, 영국, 독일의 10%보다 높은 편임

- 보유기간 요건은 미국의 경우 1년으로 6개월인 우리나라보다 길지만,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고 영국과 독일은 별도의 보유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함
  - 선택 규정으로 남아 있는 영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비교하는 경우에도 영국은 자회사, 손회사 및 증손회사까지 공제대상으로 규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회사까지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
- 배당소득 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및 이월공제 규정의 경우 각 조사대상국의 한도 계산방식과 이월공제 규정이 상이하어, 이중과세 조정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나 조사대상국에 비하여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한 것으로 보임
- 통상적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된 조세를 공제대상 세액으로 하여 자국의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을 한도로 공제한다는 측면에서 조사대상국과 우리나라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은 유사함
  - 한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및 이월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적용하면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월기간은 3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짧으나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한도로 계산하면서 공제한도의 여유분도 이월이 가능하므로 이중과세 조정효과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별 한도 계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세율국에서는 계속적으로 한도초과가 발생할 것이며, 저세율국에서는 한도 여유분이 계속 발생할 것임
  -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유형별, 원천별로 공제한도를 계산하므로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나, 소급공제의 허용 및 한도초과액의 이월기간이 각각 10년과 무기한으로 우리나라보다 한도 초과액의 공제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한도 초과에 대한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2. CFC제도의 비교

-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사대상국은 모두 피지배외국회사(CFC)의 소득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과세하는 이른바 CFC규정을 두고 있음
  - 조사대상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등 국외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외자회사의 10% 이상을 보유한 자국의 주주를 과세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소득이전방지세제로 CFC 외에도 최근 저세율 과세 무형자산 소득 추가과세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 조사대상국이 CFC 과세대상인 수동소득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법문에 상세히 규정된 바는 없음
  - 우리나라의 법조문상 '해당 국가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등에 상세히 소득 구분에 대하여 위임된 바 없음
  - 미국의 경우 수동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Subpart F'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소득, 외국기지회사소득, 보이콧 관련 소득, 미국 내 자산투자 소득 등으로 상세히 분류 및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수동소득을 판단하는 4가지의 면제 테스트(사업기준 테스트, 실체 기준 테스트, 관리지배기준 테스트, 업종별 소재지국 및 비특수관계자 거래 테스트)를 상세히 규정하여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득을 수동소득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영국에서의 사업활동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이 포함된 경우, 상거래 이외의 소득을 포함한 경우, 금융거래이익이 포함된 경우 등 CFC 적용 대상 및 요건을 세분화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CFC와 관련하여 능동적 소득을 별도로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기능적인 관점에서 수동적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 CFC 적용의 면제 요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지 실제 세부담이 소득 대비 15% 이상인 경우와 금액 2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국과 비교하면 면제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된 세율이 일괄적용되고 있음
  - 조사대상국은 모두 CFC 적용 면제금액 기준과 세율기준이 있으며, 미국은 100만 달러 이하 또는 현지 세율이 미국 법인세율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됨
  - 일본의 경우 현지 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면제되나 페이퍼 컴퍼니, 현금박스, 블랙리스트 기업 등에 해당되면 30% 이상 경우에 면제규정이 적용되며, 수동소득 합계액이 2천만엔 미만이면 CFC 적용을 배제함
  - 영국의 경우 현지 세부담이 영국 세부담액의 75% 이상인 경우와 CFC 순소득이 5만파운드 이하이면 면제되며, 독일의 경우 현지 세율이 25% 이상이거나 CFC 수동소득이 8만유로 이하이면 면제됨
  
- 우리나라의 경우 CFC 적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결손금 상계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조사대상국의 경우 CFC 손실상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CFC 소재국의 특수관계법인의 전기 결손금을 당기의 CFC 소득 계산 시에 공제 가능하도록 함
  - BEPS Action 3의 권고안에서도 동일 소재국 내의 법인에 한해 상계를 허용하고 있음
  
- 즉, 우리나라의 CFC규정을 조사대상국과 비교할 때 CFC 적용대상 지분율 요건 및 계산 방법 등은 유사하나 상세한 소득구분 규정이 없는 점과 적용 면제세율이 다소 낮은 점, 결손상계규정이 없는 등 일부 항목은 조사대상국과 차이를 보임
  - CFC규정상외의 과세표준 계산 및 직·간접 소유 비율을 고려한 지분율 요건 등은 조사대상국과 유사함

- 그러나, 조사대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수동소득과 능동소득으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CFC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대상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15%의 세율이 면제 세율로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일본은 회사 형태에 따라 고세율을 적용하기도 하며, 영국, 미국은 자국의 법인세율에 비례하여 연동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CFC 소득계산 시 조사대상국과 달리 결손 상계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V. 시사점

### 1. 국외원천소득 과세에 대한 전반적 정책 방향

- 주요 국가들은 해외 발생 소득의 국내 환류를 진작하기 위한 정책 기초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심화되고, 자본 및 경제 요소들의 이동이 자유화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만으로는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국외배당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주요 정책 목표는 본국으로의 배당 송금 확대를 위한 것임
  - 배당소득면제제도 도입으로 인해 본국으로의 소득 환류가 증가하였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됨
  
- 다수의 국가들이 원천지주의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과세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은 국가 조세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의 해외자회사들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
  - 여러 해외자회사들을 두고 있는 글로벌기업들에 대해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행정 및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반면 투자소득 등을 저세율국에 유보함으로써 본국에서의 과세를 회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보다 강화하는 추세임

- 원천지주의를 무작정 확대할 경우 경제적 이유보다는 조세회피 차원에서 저세율 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소득을 집중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전 세계적으로도 OECD 등의 주도하에 저세율국에의 수동소득 유보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보다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짐
  - CFC규정도 소득 종류 및 외국법인의 특성 등에 따라 규제 정도를 세분화하는 시도가 있으며, 미국과 같이 기존 CFC규정 이외에 별도의 제약을 가하는 경우도 있음
- 정상적 해외 사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부담을 줄여 국내 소득 환류를 유도하는 한편 저세율국을 활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규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2. 국외 배당소득에 대한 정책 시사점

### 가. 지분면세제도 도입 검토

- 해외에서의 정상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환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 방안으로 지분면세제도를 고려할 필요성도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만으로는 이중과세의 완전한 경감이 어려움
  - 일부 조세피난처 등 악용 사례를 제약하기 위해 오히려 사업상 이유로 진출한 다수의 현지법인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지분면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세체계의 간소화 및 국내로의 소득 환류에 기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 여부 판단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분면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과세 목표에 따라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비율 등의 적용 요건을 조정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최적화할 여지가 있음

-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면적 지분면세제도 도입이 어려울 경우 부분적으로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 가능함
  - 미국 및 영국은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데 비해 일본 및 독일은 95%의 비율 적용
- 지분참여 비율이나 기간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은 지분율 25% 이상 조건을 요구하며, 미국은 1년 이상 해외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는 등 국가마다 다소 엄격한 요건을 두기도 함
-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의 병용이나 선택적 적용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분면세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양 제도를 병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 저세율국에의 자본 집중 및 투자수익 제고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특정 국가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향후 우리나라가 지분면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책 검증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분면세제도 도입의 목적을 내수 경기의 활성화로 본다면 앞선 도입국가들의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배당송금액은 증가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 한편, 미국이 지분면세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미국의 도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등이 이루어진 후 이를 참고하여 국내 도입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보완

- 지분면세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상적 사업활동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은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국가별 한도 적용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지분면세방식을 적용하는 다수의 국가들에 비해 이중과세 부담이 높은 편임
  -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으로 인해 사용료 등의 다른 소득으로 지급하는 등 경제 거래의 왜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국가별 한도를 두는 방식보다는 소득유형에 따라 공제한도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능동적 사업활동 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분면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별 한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이중과세 부담이 클 수도 있음
  - 해외자회사가 수동적 투자활동보다는 능동적 사업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한도를 운용하는 것보다는 소득유형에 따른 차등적 적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
    - 주요국 중 미국, 영국은 소득유형별로 한도를 적용하며 일본은 일괄한도를 적용함
  - 소득유형별 한도를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복잡한 구분보다는 능동소득과 수동소득으로 대분류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음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외자회사 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여 지분면세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지분율 요건을 현행 25%에서 다소 낮추어 실질적인 이중과세 경감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 3. CFC제도의 개선방향

- 일괄적인 적용을 통해 다수의 납세자를 포함하는 것보다는 소득의 종류나 사업 형태에 따라 CFC규정의 적용 대상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CFC규정 목적 자체가 무조건적인 저세율국 과세보다는 비생산적인 자본투자나 경제 거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OECD BEPS에서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보다 세밀한 규정을 할 것을 권고함
  - 우리나라는 적용대상 납세자 및 업종이 광범위하고 판단이 모호한 반면 저세율국 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음
  
- CFC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업종 구분 위주의 접근보다는 수동소득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해당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상세소득 분류 및 일본의 수동소득 여부 테스트 기준 등을 참고 가능
  - 외국법인의 형태나 사업 방식 등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저세율국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각 국가들의 법인세율 및 경제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정비할 필요도 있음
  - 우리나라 CFC규정상 저세율국 판정을 위해 15%로 고정된 기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국제경제 환경 변화나 법인세율 인하 경쟁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저세율국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본질적으로 저세율국 여부는 본국과의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것이므로, 특정 세율로 고정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법인세율과의 차이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음

-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외국 법인세율이 본국 법인세율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저세율국으로 간주하는 방안 참고

- 필요에 따라서는 저세율국으로의 무형자산 이전거래 등에 대해 별도의 과세 조치를 도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 가능함
  - CFC제도만으로는 저세율국에의 소득 유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미국에서와 같이 무형자산 이전 등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분면제제도 도입 시 CFC제도와 병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현행 세법상 CFC규정 적용 시 배당으로 간주되는바, 지분면제제도와 그대로 병용할 경우 간주 배당에 대해 소득면제되어 CFC규정의 취지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지분면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CFC규정에 해당하면 배당소득면제 혜택을 배제하는 조정 장치를 두어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1. 참고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8.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 김재진·송은주·마정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 송은주·마정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국외소득면제방식 도입방안』, 한국세무학회, 2012.
- 송은주·이정엽,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 효과-일본과 영국의 한국 자회사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017.
-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17-04호, 17-1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세법연구센터, 『효과적인 CFC규정의 설계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안종석·구자은,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 오남교,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방안 연구』, 2013.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정재호·구자은·송은주, 『미국·일본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 최보람, 「투자지국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제도 신설이 원천지국 자회사의 배당성향 및 이익률에 미치는 영향 -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2015. 8.

한국수출입은행, 『2015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016.

홍범교·김태훈·마정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홍범교·김태훈·마정화, 『주요국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 조사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Asatsuma, Akiyuki, “Japa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Surveys - 7. Anti-Avoidance,” IBFD

Blümich, Walter, “Einkommensteuergesetz, Körperschaftsteuergesetz, Gewerbesteuergesetz”, 101. edition, Verlag Franz Vahlen, 2008.

Collins and Shackelford, “Global organizations and taxes: An analysis of the dividend, interest, royalty, and management fee payments between U.S. multinationals’ foreign affiliat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ume 24, Issue 2, 15 December 1997, pp.151-173

Deloitte, “Guide to Controlled Foreign Company Regimes,” 2014.

Deloitte, “Taxation and Investment in Japan 2017,” 2017.

Desai, Mihir A., Dhammika Dharmapala,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06, vol. 79, issue 1, pp.145-179

Egger, P., V. Merlo, M. Ruf, G. Wamser, “Consequences of the new UK tax exemption system: evidence from micro-level data,” *The Economic Journal*, 2015.

Foley, C. Fritz, Jay C. Hartzell, Sheridan Titman, Garry Twite, “Why do firms hold so much cash? A tax-based explan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86, issue 3, 2007, pp.579-607.

Furuseth, Eivind, “Norway - Corporate Taxation 7. International Aspects,” IBFD

Hanlon, Michelle, Rebecca Lester and Rodrigo Verdi, “The effect of repatriation tax costs on U.S. multinational investment,” *Journal of*

- Financial Economics*, vol. 116, issue 1, 2015, pp.179-196
- Hasegawa Makoto, Kiyota Kozo, “The effect of moving to a territorial tax system on profit repatriation: Evidence from Japa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17.
- Hirokazu Mizobata, Masaaki Suzuki, “The Effects of Repatriation Taxes on FDI: Evidence from OECD Multinationals,” 2014.
- Kraft, Gerhard, “Außensteuergesetz Kommentar,” 1. edition, Verlag C. H. Beck, 2009.
- Liu, Li, “The Effects of UK's Switch to Territoriality on Domestic and Outbound Investment: Evidence from Micro-Level Data,” 2014.
- Obuoforibo, B.R., A.M. Bal & J-E. D'Auvergne,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 OECD,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2015.
- Oler, Mitchell, Terry Shevlin, and Ryan Wilson, “Examining Investor Expectations Concerning Tax Savings on the Repatriations of Foreign Earnings under 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2007.
- Perdelwitz, Andreas, “Germany-Corporate Taxation-Country Analyses-7. International Aspects,” IBFD
- PwC, “Amendments to CFC rules by 2017 Tax Reform,” 2017.
- Reinstra, John G., “United States-Corporate Taxation-Country Surveys-6. International Aspects,” IBFD
- Ueda, Miyuki, “Corporate Taxation of Dividends: A Comparison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German System,” 2009.
- Weiss, Martin, “Recent Developments in the German Tax Treatment of CFCs, European Taxation,” 2015.
- Yoshihiro Masui, “Taxation of Foreign Subsidiaries: Japan's Tax Reform 2009/10,”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Vol.64, No.4, p.242

## 2. 웹사이트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독일 세법 검색 사이트, (<https://www.dejure.org/gesetze/EStG/>)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lications/>)

미국 세법 검색 홈페이지,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

미국 의회 (<https://www.congress.gov/bill/>)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a.go.jp/>)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gov.uk/>)

영국 재무부 (<http://www.hm-treasury.gov.uk>)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IBFD, (<http://www.ibfd.org>)

KPMG, (<http://www.kpmg.com/>)

OECD, (<https://www.oecd.org/>)

세법연구 18-04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이중과세배제 및 CFC 세제를 중심으로 -**

---

발 행 2018년 6월 29일

저 자 전병목 · 김준현 · 장우용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ISBN 978-89-8191-941-2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http://www.kipf.re.kr)

